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2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및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Mobile Service and the Framework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고창열/이상우/정내양/박소영

2011. 12

연구기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11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및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연 구 기 관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총괄책임자 : 고 창 열

참여연구원 : 이 상 우

정 내 양

박 소 영

목 차

요약문 ····· **7**

제 1 장 서 론 ·····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 8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 **9**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 9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 17

제 3 절 회계분리의 개요 및 절차 ····· 21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해외사례 ····· **27**

제 1 절 영국 ····· 27

제 2 절 미국 ····· 42

제 3 절 호주 ····· 54

제 4 장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방안 연구 ····· **64**

제 1 절 이동통신망 개요 및 선행연구 ····· 64

제 2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를 위한 원가동인 식별 ····· 68

제 3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원가 배부방안 ····· 72

제 4 절 마케팅 원가 및 지원성격 원가 배부 ····· 79

제 5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수익 배부방안 ····· 83

제 5 장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연구 ····· **92**

제 1 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재정의 ····· 92

제 2 절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 분류체계 개선방안 ····· 100
제 3 절 세부역무 조정방안 ····· 115

제 6 장 결 론 ····· 121

[별첨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 124

[별첨 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안 ····· 126

참고문헌 ····· 131

표 목 차

<표 1－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변화 ····· 6
<표 2－1>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 16
<표 2－2>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 19
<표 2－3> 영업보고서 세부양식 및 주요내용 ····· 25
<표 3－1> 유럽공동체 통신산업에 관한 5가지 EU지침 ····· 27
<표 3－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에 관련한 자문서 ····· 29
<표 3－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에 관한 의무 ····· 32
<표 3－4> BT의 규제재무보고의 조건 ····· 33
<표 3－5> 규제재무보고서 주요내용 ····· 37
<표 3－6> BT의 SMP Market ····· 39
<표 3－7> Title 47의 주요 내용 ····· 43
<표 3－8> ARMIS 제출 보고서 양식 ····· 49
<표 3－9> RAF 제출의 보고서 유형 ····· 56
<표 3－10> RAF의 규제항목 ····· 58
<표 4－1> 이동망 원가동인 분류 ····· 68
<표 4－2> Ofcom의 커버리지 원가 분류 ····· 69
<표 4－3> 3G 설비 세분화 및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 70
<표 4－4> 이동망 교환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 72
<표 4－5> 이동망 전송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 74
<표 4－6> 전파사용료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 74
<표 4－7> 이동망 선로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 75
<표 4－8> 음성서비스 제공시 WCDMA 기지국 용량 ····· 76
<표 4－9> 기지국 파워기준 음성·데이터 트래픽 효율 비교 ····· 77
<표 4－10> 지원성격 자산/감가상각비의 역무별 배부기준 ····· 79
<표 4－1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외의 운영비용 역무별 배부 ····· 80

<표 4－12>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안) ····· 81
<표 4－13> 일반관리기능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안) ····· 82
<표 4－14>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 ····· 84
<표 4－15> 요금수익의 형태별 분류 ····· 84
<표 4－16> 발생가능한 요금제 유형 ····· 87
<표 5－1> IFRS기반 공시용 계정과목체계_계정과목 ····· 98
<표 5－2> 영업비용 형태별 분류(계정과목) 개선방안 ····· 99
<표 5－3> K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 100
<표 5－4> SK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 104
<표 5－5> LG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 107
<표 5－6> 회계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개선안 ····· 116
<표 5－7>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개선안 ····· 116
<표 5－8> 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위성휴대통신서비스 가입현황 ····· 119
<표 5－9>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분류체계 개선안 ····· 120

그 림 목 차

[그림 2－1] 통신규제정책의 목적 ····· 11
[그림 2－2]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 13
[그림 2－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 14
[그림 2－2] 회계분리의 절차 ····· 24
[그림 3－1] 미국 회계규칙의 상호관계 ····· 45
[그림 4－1] CDMA2000-1X/EVDO 망 구성도 ····· 64
[그림 4－2] 3G 망 구성도 ····· 65
[그림 5－1] 공시용 표준계정과목체계 구성방법 ····· 96
[그림 5－2] 이동통신 기술진화 방향 ····· 117

요 약 문

1. 제 목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및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간의 회계분리’는 이동전화서비스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모두 제공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공통원가와 공통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배부하여 분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동통신은 아날로그 이동통신에서 디지털 이동통신으로, 그리고 3세대 CDMA (코드분할다중접속) 이동통신으로 발전하면서 음성서비스에서 데이터 서비스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최근 데이터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음성데이터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규정의 부재는 통신회계제도가 천명하는 상호보조의 금지를 묵시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 서비스 원가왜곡으로 요금과 접속료 등을 통해 경쟁구조 및 사회적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호보조의 금지는 통신회계제도의 기본전제에 해당하며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는 암묵적 상호보조를 금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현재 음성서비스 원가는 요금원가 산정 및 접속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규제정보가 되며, 규제목적의 달성에 필수적인 기초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무선데이터 매출액의 증가와 스마트폰의 활성화 등으로 인한 데이터트래픽의 급증 등 이동통신서비스가 음성서비스 중심에서 데이터서비스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기간통신역무 허가단위가 통합됨에 따라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통신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며, 규율중심(Rule based)이 아닌 원칙중심(Principle based)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통신회계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통신회계제도는 취득원가기준의 K-GAAP에 따른 기업회계자료를 기초로, 회계분리작업 및 검증을 수행하며 상호접속원가, 원가보상율,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투자보수율 등을 산정하고 있다. ‘10년 사업법개정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 재정의, 무형자산,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의 분류체계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방식(LTE 등)에 의한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부역무 추가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10년 스마트폰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 및 신규서비스로 인해 통신서비스 중 데이터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동통신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10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 재정의, 무형자산,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술방식(LTE 등)에 의한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부역무 추가 필요성을 검토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기존연구에서 검토하지 않았던 사항에 해당하는 '10년 사업법개정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을 재정의하고, 무형자산,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술방식(LTE 등)에 의한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부역무 추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통신회계기준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독창성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으로는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전용 설비는 직접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할당하고,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공용설비는 인과관계 및 원가행태를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익의 음성데이터 분리는 사업자의 과금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음성데이터 분리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K-IFRS 도입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상 형태별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계정과목명은 기존의 K-GAAP에 따라 통신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여 온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IFRS 도입에 따라서 별도로 영업보고서의 형태별 회계분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별 분류체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와의 조정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K-GAAP상 계정과목을 IFRS의 텍사노미상의 표준화된 계정과목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의 변화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행 K-IFRS에서는 회계처리가 K-GAAP과 달라지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수익인식과 관련된 IFRS 공개초안이 도입되는 경우 이동전화 요금수익과 단말기 보조

금이 요금의 할인형태로 지급된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수익을 결합판매(multiple element arrangement)로 간주하여 2개 서비스(단말 매출과 통신서비스 제공)의 각각의 공정가치에 따라 요금수익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서비스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수익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재 단말기 매출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이어 향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 보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IFRS 공개초안이 실행될 것에 대비하여 단말기 매출과 요금수익의 배부기준을 규제목적에 부합하게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신시장의 큰 변화흐름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이 등장, 4G LTE 서비스의 상용화 그리고 서비스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및 서비스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대상 서비스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새로운 서비스인 LTE서비스에 대한 회계분리가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요금설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는 실질적인 회계처리 방법 변화와 함께 보다 실무에 적합하고 경제적 실질을 잘 반영한 회계분리기준의 수립 및 정책 수립에 아래의 사항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방안의 제시로 인해 효율적인 원가정보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둘째, K-IFRS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의 형태별(계정별)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전기통신사업 영업보고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 개정 등 통신회계 제도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6. 기대효과

본 연구결과는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각 대가 산정, 보편적 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각종 규제정책 수립시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산정 및 망간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지속적인하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Mobile Service and the Framework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e main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and analyze the various problems in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policy decision making and then to suggest a more realistic and applicable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Following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accounting principles must be revised to adjust to them. Basic information on telecommunication business is necessary for efficient and effective policy-making for the telecommunication industry. Since accounting data supplies basic information for rate making, interconnection charge, promotion of fair competition, universal service fund, policy development and execution for improvement of telecommunications market structure,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eds to be reviewed consistently.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Chapter 2 provides the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and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t reviews characteristic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to establish its independent accounting system, and major contents of Accounting Principles established for ensuring fair competition among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Chapter 3 reviews the foreign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Service and finds strengths and weakness of those. We study main issues related to current Accounting Revision and revises them.

4. Research Results

The Accounting Principles was revised to include changes of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owever, the Principles still needs to be reviewed and analysed regularly for providing more useful information for governmental policy decision-making and its implementation, and also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to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The reformation plan for the Account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ill be reviewed and used for amending current Principles.

The cost information by services calculated by revised Accounting Principles will be more useful for tariff charges, interconnection charge, universal service

fund and etc.

6. Expectations

This research will provide a foundation which helps to build up a variety of useful cost information data for effective and efficient policy decisions and implementations through revising current Accounting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t will drive a fair competition in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and prevent consumers' welfare from being decreased by controlling non-fair competition factors. It will also contribute to calculate proper costs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access charges and universal service costs through rational accounting separation.

Moreover,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velop the Tele communication Industry because it drives faire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through providing useful and proper accounting information.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Analysis the Account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hapter 3. Study on the Foreign Account Principles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Chapter 4. Study on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Mobile Service

Chapter 5. Study on the Framework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Chapter 6. Conclusion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필요성

최근 통신산업은 유·무선 사업 통합 등을 이루어나가고 있는 MNO 3사(SK텔레콤, KT, LGU+)간 경쟁체제로 구성된 상황이다. 특히 무선데이터 시장의 급성장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

이동통신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으로 가입자 수는 '11년 11말월 기준 5,234만명으로 포화단계에 진입하였으나,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10년 1월 103만명(전체 대비 2%)에서 '11년 10월 2,000만명을 돌파하는 등 급증하였다.

과거의 휴대폰이 음성통화의 수단이었다면 지금의 스마트폰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편익을 주는 도구로써 정보습득, 업무수행, 사회적 관계형성, 여가활용 등 스마트 생활 혁명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확대에 따라 데이터서비스 트래픽은 급증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망을 기반으로 MVNO, m-VoIP등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출현하고 있다.

한편 데이터트래픽량은 이미 음성트래픽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통 3사의 '11.7월 기준 무선 데이터 트래픽은 12,105TB/월로 스마트폰이 본격 도입된 '09.11월의 322TB/월에 비해 약 37.6배가 증가하였다. 데이터트래픽의 증가는 이를 뒷받침할 투자비의 증가를 요구한다. 이는 결국 이용자의 요금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08년 이후 도입된 직접적 요율인하 및 초단위 과금제 도입, 할인혜택을 포함한 다양한 선택요금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통신비 지출은 증가하였다. 이는 아이폰 등장 이후 초고속인터넷에서 스마트 미디어 시대로 진입하면서 멀티미디어 서비스 이용을 유발하는 스마트폰 가입자의 비중 증대에 기인하며, 그 결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always-on 인터넷으로 무장하여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함으로써 통신복지가 향상되었으나, 결국 이용자당 평균 통신비 지출증대를 유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규제산업은 원가에 기반한 요금을 설정하게 되며, 규제기관에 의한 요금정책의 주된 목표는 해당 시장이 경쟁적이었다면 달성했을 가격을 산정하여 요금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규제산업에서 요금규제가 요구되는 이유는 규모 및 범위의 경제로 인한 자연독점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기관이 인가하는 규제요금이 독점요금이 아닌 경쟁요금에 근사하기 위해서는 고정원가 및 공통원가의 공정・타당한 배부가 필수적이다.

이동망 원가의 대부분은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는 공통원가에 해당하므로 명확한 원가동인 및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동망에서의 음성・데이터간 요금원가 정보는 요금뿐만 아니라 접속료를 포함한 도매요금 등 다양한 규제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다. 하지만 기존 접속료 산정시 정책적으로 음성:데이터 비율을 9:1로 적용한 것이 전부였듯 아직까지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에 대한 정책반영의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는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2.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 필요성

‘10. 3. 22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시 허가제도 개선을 통해 개별적 허가단위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받도록 개정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역무 및 부가통신역무의 구분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한 것이다.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

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 중략 -
> 11. “기간통신역무”란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 12. “부가통신역무”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도 기간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로 구분하였던 제7조를 삭제하여 기간통신역무의 종류는 사라지게 되었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역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는 제외한다.
> 1.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하지만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 제16조(역무의 분류)에 따르면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를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로 여전히 구분하고 있으며, 역무의 세부분류는 별도로 고시토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4.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 제3조 세부역무의 정의에서는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함)를 규정하고 있다. 기간통신역무를 3개 역무, 28개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다(전기통신역무는 부가통신역무 포함 4개역무, 28개서비스로 회계분리됨).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가. 일반전화가입자접속서비스: -중략- 나. 시내전화서비스: -중략-
다. 시외전화서비스: -중략- 라. 국제전화서비스: -중략-
마. 공중전화서비스: -중략- 바. 전화번호안내서비스: -중략-
사. 전화부가서비스: -중략- 다만, 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비스로 구분을 추가하여야 한다.
아. 인터넷가입자접속서비스: -중략- 자.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 -중략-
차. 인터넷백본접속서비스: -중략- 카. 인터넷전화서비스: .-중략-
타. 구내통신서비스: -중략- 파. 기타전송서비스: -중략-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중략-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중략- 다. 무선호출서비스: -중략-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중략-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중략-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중략-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중략-
아. 위성통신서비스: -중략-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중략-
차. 와이브로: -중략-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중략-

3.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가. 시내회선설비임대서비스: -중략- 나. 시외회선설비임대서비스: -중략-
다. 국제회선설비임대서비스: -중략- 라. 기타회선설비임대서비스: -중략-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간통신역무의 종류인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가 삭제되었으므로 회계분리 대상역무 구분에서도 사업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회계규정의 역무분류를 4개역무에서 2개역무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통신회계기준상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 재정의, 무형자산,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의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통신회계기준은 규제의 필요에 따라 회계처리방식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과 별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회계규정 제4조 제1항 제3호).

회계규정
제4조(전기통신사업회계의 원칙) ①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중략- 3. 이 영에서 회계정리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를 것

통신회계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항목은 회계분리기준 제7조(유형자산 등의 취득)와 제8조(감가상각방법)뿐이다. "유형자산 등의 취득"은 규제회계정보 산출시 역사적 원가에 기반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하였으며, "감가상각방법"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규제목적상 객관성과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원가수준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은 기업의 회계처리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통신회계정보 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통신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의 재정의를 통해 비교가능하고 신뢰성있는 회계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은 규정하는 원칙(Principle)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회계처리가 자율적으로 선택가능하므로 비교가능성 저하가 우려된다. 현행기업회계기준은 특

정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규정(Rule)함으로써 유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기업들이 모두 동일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IFRS기준 하에서는 유사한 거래라 하더라도 기업이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별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통신회계제도에서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 복수가 되어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이란 ‘현행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이 도입되는 2011년 이후에는 상장사를 위한 “한국채택국제회계준(K-IFRS)”과 비상장사를 위한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화하게 되어 상장사와 비상장사간의 비교가능성 저하가 예상된다.

〈표 1－1〉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기준의 변화

구분	현행	IFRS 도입이후
상장사	현행의 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K-IFRS)
비상장사		일반기업회계기준 (K-IFRS 적용 가능)

따라서 규칙중심의 회계기준을 가정한 현행 통신회계제도에서 원칙중심의 IFRS에 따른 회계처리방식을 그대로 이용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영업비용, 영업외비용의 구분도 모호하여 통신서비스원가에 포함되는 원가항목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기술방식에 의한 LTE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부역무 추가 필요성 검토가 필요하다. 서비스별 상호보조 금지 및 새로운 서비스의 원가 및 요금 정보제공을 위해 세부역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회계

분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세부역무의 통합 및 개선이 필요하다.

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폰 이용자의 폭발적 증가로 인해 통신서비스 중 데이터 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요금원가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진 이동통신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사업법개정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의 구성요소인 계정과목 재정의, 무형자산,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의 분류체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새로운 기술방식(LTE 등)에 의한 네트워크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부역무 추가 필요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결과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 등 통신회계 제도 정책수립에 활용될 것이다. 이를 통해, 융합환경하에서의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시의적절하고 합목적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사업자 회계정보 산출을 유도할 것이다. 또한 전기통신역무 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간 각 대가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각종 규제정책 수립시 합리적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산정 및 망간 접속에 따른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통신요금의 지속적 인하 및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제 2 절 보고서의 구성

본 연구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었다. 제2장에서는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특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또한 회계분리의 개요 및 절차를 살펴보고 영업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해외의 전기통신 회계제도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이동망의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에 대한 회계분리기준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각 이슈 및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향후 스마트 생태계 환경 및 IP화와 융합 환경하에서의 통신회계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제 1 절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특징

1. 전기통신사업의 특성과 통신회계제도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은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고정자산 비율이 높으며 공통원가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의 총원가성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하여 크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통신산업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타 산업에 비하여 대규모의 초기 설비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총자산에서 고정자산이 일반 제조업이나 일반 서비스업에 비하여 매우 높다. 이로 인해 다른 산업과는 차별적인 회계적 특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전기통신산업은 동일한 망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기에 망 운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결합원가(joint cost)또는 공통원가(common cost)로 발생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하나의 서비스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개별 원가를 식별하기 어렵다. 결합원가란 연산품과 관련된 원가로서 동일공정·동일재료에서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제조되며, 제조되는 제품에 주와 부를 구별 할 수 있는 제품을 연산품이라 한다. 이러한 연산품을 생산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를 결합원가라 한다. 이러한 연산품은 원재료가 동일하며 동일 공정에서 개별 제품들이 생산되므로 연산품별 원가 계산이 매우 어려우며, 그러한 예로는 정유·제철 등이 있다. 또한, 공통원가란 원가집계단위에서 공통적으로 생성하는 원가를 의미하며, 통신서비스를 살펴보면 단일 네크워크상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네크워크 관련 원가를 공통원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서비스별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 일정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원가를 배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가배부는 제정자의 편의없이 설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간에 원가배부기준과 관련한 이해관계의 상충

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사업자간의 이해관계 충돌은 통신네트워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떠한 기준으로 분류하며 원가를 배부하는지에 따라 통신사업자간 서비스별 손익에 큰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통신사업자 간에는 물론 해당통신사 내부에서도 부서별 부문별로 이해관계를 달리하기 때문에, 서비스별 원가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공통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회계분리제도가 필요하다. 즉 서비스의 원가는 회계분리에 영향을 받게 되며, 사업자별로 서로 다른 이익과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규제기관이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회계분리 기준을 제정하여 해당사업자들이 회계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감시하고, 회계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기통신사업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기에 막대한 설비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와 진입장벽에 따른 자연독점사업일 뿐만 아니라 통신서비스가 국민 개개인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다. 이러한 공공성의 특성으로 인하여 통신요금은 자유경쟁시장에서 가격결정을 위한 수요와 공급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 아닌 공공서비스와 기업의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경쟁활성화 등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결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제조업에서는 제조원가를 완제품 재고의 형태로 자산화 한 후 판매시점에 매출원가로서 회계 처리하며, 제품원가와는 별도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기간비용으로 제조원가와 분리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제조업과는 달리 재고를 저장하여 판매할 수 없는 비저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에서는 원가에 판매비와 관리비 등 모든 원가가 포함된 총원가의 개념으로 비용을 회계처리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든 가치를 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통신사업은 신규 투자시에 막대한 설비투자의 문제와 높은 유지보수비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독점사업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통신서비스가 가지는 국민과 기업이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공공재의 하나라는 공공성의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공공성과 자연독점사업이라는 특징에 따라 통신요금 결정이 자유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공성과 서비스 제공 기업의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가운데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과정에서 통신규제정책은 이용자보호, 경쟁활성화 및 통신인프라 확충이라는 세 가지 큰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 왔다.

[그림 2－1] 통신규제정책의 목적



이러한 과정에서 통신요금의 특징은 사업자의 이익을 고려하며 국가가 가지는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와 함께 국민들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는 공공성까지의 조화시켜야 하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는 통신사업자와 정부 그리고 이용자인 국민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검증가능한 원가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정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갖는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는 분리제도에는 구조분리(structural separation), 기능분리(functional separation), 회계분리(accounting separation)가 있으며, 규제의 강도는 구조분리, 기능

분리, 회계분리의 순서이다. 회계분리는 낮은 수준의 규제수단으로 많은 나라에서 전기통신사업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조분리는 기업 지배구조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사업부분을 모회사에서 분리하여, 외부에 매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사업부 매각에 따른 구조분리는 해당 기업의 지배구조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규제 분리제도이다. 그러나 규제기관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존사업자가 후발 신규사업자를 차별하려는 유인을 제거함으로써 공정경쟁의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규제자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기능분리는 사업부를 매각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분리된 사업부분을 신설하고, 이를 분리된 지배구조하에서 독립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 구조분리와 차이가 있다. 기능분리는 실제 구조분리와 매우 유사하지만 사업부분을 매각하지는 않고 회사 내의 사업부로 남게 되는 점이 구조분리와 다른 점으로. 상대적으로 구조분리 보다는 강도가 낮은 규제제도이다. 영국에 BT의 시장지배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가입자망을 사업부로 독립시켜 별도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게 했던 오픈리치(openreach)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회계분리는 앞에서 언급한 구조분리와 기능분리가 실제 기업의 지배구조 또는 사업부문 구조를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변경하는 구조적 규제제도임에 반하여, 가격압착, 상호보조(cross subsidy)를 방지하고 원가기반의 상호접속, 보편적서비스 제도 등을 운영하기 위해 회계적으로 자산과 손익을 규제대상과 비규제대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는 규제제도로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이다.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은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사업자 등이 전기통신역무의 원가산정, 전기통신설비간 상호접속료·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

여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를 위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 제3조).

[그림 2－2]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



즉,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역무의 원가정보를 포함한 유용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는 것이다. 특히 규제제도가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이됨에 따라 규제회계제도가 생성하는 회계정보는 사후규제 수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가 된다.

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

전기통신산업은 국민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문화적 기능 및 독점적 산업 구조 등 제조업 등의 다른 산업과 비교하여 다양한 특성이 존재하는 산업이다. 이러한 특성은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동기를 유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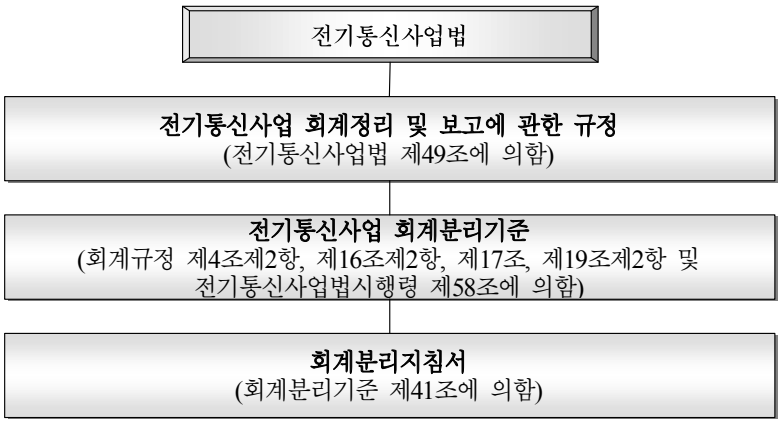
였으며 그 당위성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전기통신산업 규제의 핵심수단이 원가와 같은 회계정보이다. 미국과 EU,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전기통신산업에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를 수행하기 위해 회계정보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정책의 개발과 수행 및 통제과정에서 원가정보에 기초한 규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가 1990년대 초에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을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경쟁으로 인하여 공정 경쟁, 요금, 접속, 설비제공, 설비공동사용, 보편적서비스,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제반 정책과 관련된 기초 자료를 수집 할 수 있는 근거로서 회계제도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구)정보통신부는 1994년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게 되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는 「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 고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3]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현행 법체계



회계규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행하여야 하는 회계처리에 대한 원칙과 기본적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규정은 주로 회계적 사건에 대한 인식과 측정, 즉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이다. 회계분리기준은 수익, 비용 및 자산을 배부기준에 따라 세부역무별로 배부하는 실제적인 회계분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회계분리기준은 주로 회계처리이후 산정된 수익, 비용, 자산 등의 역무별 회계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4.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와 기업회계기준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재무회계는 다양한 외부의 정보이용자의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보고실체의 거래를 인식, 측정,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무정보의 산출 및 보고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회계의 한 영역이다. 재무회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서를 기준으로 하여 대차대조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회사의 재무상황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우리나라의 전기통신회계제도에 의한 영업보고서는 회계규칙, 회계분리기준, 사업자별 회계분리지침서에 의하여 작성된다. 전기통신사업회계는 재무회계와는 달리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한정되어 적용되고 그 정보이용자도 일반 대중이 아니라 사업자 및 규제기관이 된다.

이와 같이, 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해당 사업자 등 기업외부의 정보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과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는 재무회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재무회계는 회사전체를 하나의 실체로 보고 재무정보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 제공하지만 전기통신회계는 일정한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기능별, 역무별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하여 재무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이렇게 기능별, 역무별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것을 회계분리라고 하는데, 회계분리가 전기통신회계제도의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통신회계기준은 최종적인 회계대상이 법인 단위인 재무회계와 달리 개별 서비스별이다. 통신회계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회계규정과 회

계분리기준에 의한 역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가회계 및 관리회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전기통신산업의 특성상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른 공통원가 및 공통수익의 회계분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능별, 역무별 또는 서비스별로 구분하는 것을 회계분리라 하는데 회계분리는 전기통신회계제도의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기통신사업회계의 결과물은 일반적인 재무제표가 아닌 영업보고서이다.

〈표 2－1〉 전기통신사업회계와 재무회계의 비교

구분	통신회계	재무회계
목적	규제목적 달성	재무적 정보 제공
이해관계자	규제기관, 당해사업자	투자자, 금융기관, 일반 대중 등
관련 규정	회계규정, 회계분리기준 등	기업회계기준, 회계준칙 등
수익·비용 인식	개별 역무별	회사 전체
성격	원가회계	일반회계
결과물	영업보고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

제 2 절 통신회계제도 연혁 및 주요내용

1. 현행 통신회계제도의 구성

정보통신부는 1994년 '전기통신사업의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이후 수차례의 개정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관련 법체계는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함)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이하 "회계분리기준"이라 함),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의하여 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회계분리지침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의 연혁 및 주요내용

가. 회계규정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회계규칙은 1994년 8월에 최초로 제정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2008년에 "회계규정"으로 재고시되었다.

1994년 최초 제정시에는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를 제도화하고, 영업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였다. 1996년에는 1차 개정시에는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이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되었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가 변경되었다. 이후 2001년에 2차 개정에서는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이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라고 명시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역무수를 또다시 4개로 변경하였다. 2005년 3차 개정에서는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기관의 변경과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및 인터넷접속역무와 인터넷전화역무를 추가하였다.

나. 회계분리기준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된 회계분리기준은 1996년 6월 최초 제정되어 현재까지 8차 개정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시의 주요내용은 20개의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규정과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및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등을 규정하였다.

2001년 1차 개정시에는 회계규칙 2차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회계분리대상 서비스 확대,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판매촉진비 상한에 관한 규정들이 추가 또는 신설되었다. 2005년 1월 2차 개정시에는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하고,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2005년 12월에는 회계규칙 3차 개정의 개정사항들을 반영한 회계분리기준 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12월의 4차 개정시에는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가 추가되었고,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와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2007년 12월 5차 개정시에는 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를 포함한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및 별지서식 수정 등의 개정이 있었다.

2009년 12월 개정시에는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 배부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전송·중계선로운영비용 및 판매영업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콜센터 원가 별도 집계 및 배부,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역무 할당 의무화,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영업권 인식범위 명시, 결합판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및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기준 신설,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을 회계분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토록 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2010년 12월 개정시에는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고, 회

계분리정보 산출대상이 개별사업자의 재무제표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자산재평가로 인한 자산가치변동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 이후 유형자산등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계상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에 대해 감가상각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표 2－2> 회계규정 및 회계분리기준의 변천

시기	법령(고시)	제정 및 개정 내용
1991년 8월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	•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 • 요금산정의 공정성: 상호내부보조, 가격요소조작, 비용전가 금지
1994년 8월	회계규칙 제정	• 기간통신사업자 회계분리의 제도화: 통신역무간 회계분리 • 회계분리된 영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제출 • 총칙을 포함하여 총6장으로 구성
1996년 5월	회계규칙 1차 개정	• 고정자산 및 비용의 역무별 분류와 전화역무별 분류 내용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및 표준양식에 위임 • 회계분리대상 역무를 8개에서 7개로 변경
1996년 6월	회계분리기준 제정	• 세부서비스 도입으로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로 규정 • 내부거래가격의 제정 • 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규정
2001년 3월	회계규칙 2차 개정	• 전기통신사업회계의 목적을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정보 제공으로 명시 • 7개 역무를 4개로 바꿈
2001년 3월	회계분리기준 1차 개정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 회계분리대상 서비스를 20개에서 27개로 확대 •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규정 • 총괄원가의 정의 및 범위 신설 • 통신위원회 산하 회계전문위원회 설치 • 판매촉진비 상한 규정 추가
2005년 1월	회계분리기준 2차 개정	• 전화부가서비스 등의 세부 역무 추가 • 자산 및 비용의 기능별 분류 일부 수정
2005년 12월	회계규칙 3차 개정	• 영업보고서의 제출 및 검증 기관이 정보통신부장관에서 통신위원회로 변경 • 무형자산 분류의 변경 • 인터넷접속역무 및 인터넷전화역무 추가

2005년 12월	회계분리기준 3차 개정	• 회계규칙 개정 사항의 반영
2006년 12월	회계분리기준 4차 개정	• 무선통신역무에 와이브로 추가 • 결합판매 수익의 분리 조항 신설 • 광동축혼합망 관련 배부기준 신설
2007년 11월	회계규칙 4차개정	• 영업수익, 비용등의 분류 개정 및 신설 •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2007년 12월	회계분리기준 5차개정	• 역무통합에 따른 세부역무 정의 개정(별정통신역무 분류 삭제) • 광동축혼합망의 기능별 분류 신설 • 광동축혼합망 및 IP기반서비스의 역무별 원가배부기준 신설 • 감가상각방법 및 내부거래제도 개선 • 설비사용료 및 무형자산상각액의 기능별 분류 개선 • 공통자산 및 운영비의 배부조항 개정 • 별지서식 수정
2008년 2월	회계규칙을 회계규정으로 변경	• 방송통신위원회 출범에 따른 법령 재고시(기존 법령과 내용은 동일)
2008년 5월	회계분리기준 6차 개정	
2009년 12월	회계분리기준 7차 개정	• 경영자 인증제도 도입 • 배부기준에 우선순위 부여 • 전송·중계선로운영비용 및 판매영업 공통비 배부기준 변경 • 콜센터 원가 별도 집계 및 배부 • 대리점수수료 및 단말기보조금 직접 역무 할당 의무화 •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 합병후 영업보고서 제출의무 부여 • 영업권 인식범위 명시 • 결합판매 수익 배부기준 명확화 및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기준 신설 • 요금원가 산정을 위한 투자보수율을 회계분리기준에 근거하여 산정
2010년 12월	회계분리기준 8차 개정	•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회계분리정보 산출대상이 개별사업자의 재무제표임을 명시 •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음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영업권 포함)에 대해 감가상각 명시

제 3 절 회계분리의 개요 및 절차

1. 회계분리의 개념 및 원칙

회계분리는 사업자로 하여금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요금에 대한 정책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 회계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개별서비스 또는 범주별(규제/비규제)로 자산, 수익 및 비용을 집계하고 배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은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분리 대상 항목을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부 기준을 사용하고 내부거래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신뢰성 있고 유용성 높은 회계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규정 제15조는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을 공통비용의 인위적 배분 및 내부거래비용의 인위적 측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회계분리 대상 항목을 역무별로 적절히 분리하여 해당 역무별로 정확한 수익 및 비용이 계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이 되는 항목은 회계규정 제1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등이다. 이러한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이다. 또한 이들 항목에 대한 역무별 분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회계분리 과정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적용한 배부기준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못하며 매기 계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만약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배부기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회계분리의 절차

회계분리는 개별 서비스별 또는 범주별로 수익, 자산 및 비용을 집계하고 배부하도록 하는 것인데, 회계분리는 재무회계제도에 의해 집계된 회계정보로부터 시작된다. 재무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된 정보는 형태별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 역무 또는 서비스별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4조는 회계분리의 절차를 형태별 분류, 기능별 분류,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간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과 미사용중인 자산 등의 분류, 전기통신사업에 사용중인 자산 등의 역무별 회계분리의 순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형태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

형태별 자산, 수익 및 비용의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의 분류를 따른다. 형태별로 분류된 자산, 수익 및 비용에 대해서 교환, 전송, 선로, 전원, 정보처리, 일반지원 등의 기능으로 분류한다. 기능별로 원가를 재분류하는 이유는 동질의 원가를 모아, 이러한 원가 중에서 역무 공통에 해당하는 자산과 비용에 대하여 특정한 배부기준을 원가동인으로 하여 역무별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다.

나. 전기통신사업외의 자산과 미사용자산의 분리

회계분리기준 제20조는 전기통신사업과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 등은 사업자가 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각각의 사업으로 회계분리하되,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에 대한 내용과 배부기준을 회계분리지침서에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배부기준은 회계규정 제4장의 배부기준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단,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기가 어려운 경우 자산 등의 금액이 기준금액(당해사업자의 당해연도 영업수익의 0.01% 또는 1억원 미만으로서 적은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용도의 사업으로 분류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전기통신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과 비용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의 자산으로 분류되었더라도 실제 전기통신사업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자산 등은 미사용자산으로 분류하여, 실제 전기통신사업에서 사용중인 자산을 분류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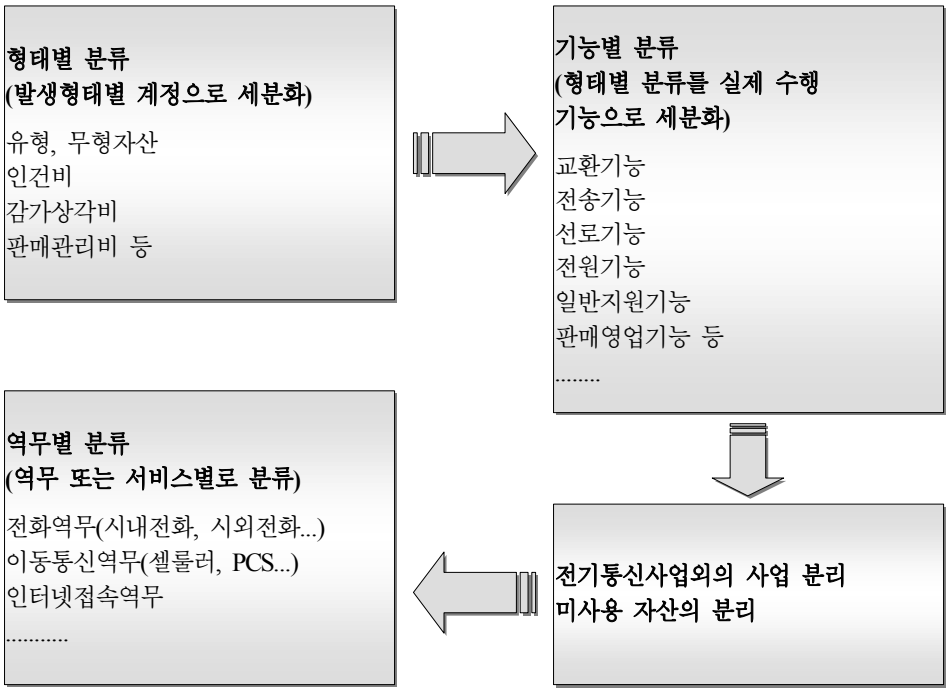
다. 역무별 분류

기능별로 분류된 비용 및 자산과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형태별 비용 중 역무별 직접비와 직접자산은 해당 역무에 할당한다. 이러한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자산 중에서 둘 이상의 역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공통비와 공통자산은 자산별 배부기준에 따라 배부해야 하는데, 각 기능별로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배부되어진다.

공통 일반지원자산의 자산 및 감가상각비는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 자산,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 자산의 4가지로 분류해서 각각의 배부기준을 적용하여 배부하고, 토지·건물·구축물 운영비는 역무별 면적비율, 그 외의 운영비는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로 배부하게 된다.

또한 공통 미착・건설중인자산의 배부는 해당기능자산의 배부기준에 의거하고, 공통 무형자산 및 상각액 공통비는 공통일반지원자산의 배부기준을 준용한다. 기능별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 전기통신설비운영 공통비의 경우는 판매영업기능, 고객서비스기능, 일반관리기능, 기업이미지광고기능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배부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림 2－2] 회계분리의 절차



3. 영업보고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에 의해 산출되는 최종 결과물은 영업보고서이다. 회계규정, 회계분리기준, 회계분리지침서에 따른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서 생성되는 영업보고서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수익, 자산, 원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회계분리지침서는 영업보고서 검증의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제출을 명하는 것으로서 회계분리기준 제41조에 의거하여 회계정리단위 내역 및 조직도, 각 기관별 배부방법, 원가의 흐름도, 회계분리단계별 배부기준 적용표,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구분방법, 전기통신기능설비의 세분류방법, 역무별 자산등의 분계점의 표시 및 기타서비스의 개념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같이 회계분리지침서에는 자산의 분류 및 배부 기준에 대하여 사업자가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특수한 상황을 회계

분리에 반영토록 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회계분리 절차를 거쳐 회계분리를 한 후,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들이 제출하여야 하는 영업보고서는 총 30개의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하여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역무별 회계분리를 위한 영업비용/감가상각비/영업외손익/유형자산등에 대한 역무별 배부명세서도 양식으로 포함되어 있다.

<표 2－3> 영업보고서 세부양식 및 주요내용

번호	양 식 명	주요 내용
1	재무상태표	일반 재무상태표와 유사하나, 통신설비자산등에 대한 세부 형태별 내역이 포함
2	손익계산서	일반 손익계산서와 유사하나, 영업수익 및 비용의 역무별 내역이 포함
3	영업통계	역무별 수익, 비용, 투자보수에 대한 요약
4	역무별 영업수익 명세서	영업수익 세부 명세
4-1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부 명세서	결합판매 요금수익 배부 명세
5	역무별 영업비용 명세서	회계분리대상 역무별 세부 영업비용 내역
5-1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명세서	결합판매서비스공통 배부명세서
6	역무별 영업외손익 명세서	역무별 영업외손익 세부 명세서
7	기능별 인건비 및 경비 명세서	인건비 및 경비의 기능별 명세서
8	내부거래 수익 및 비용명세서	내부거래제공서비스의 수익 및 이용서비스의 비용 명세서
9	자가소비사업용거래 수익 및 비용 명세서	자가소비 사업용 제공서비스와 이용서비스간 거래내역
10	형태별 영업비용의 역무별 분류 명세서	계정과목별 역무별 분류 내역

10-1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형태별 영업비용 역무별 분류 명세서	결합판매서비스공통의 형태별 영업비용 역무별 분류 내역
10-2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 명세서	판매영업기능비용 및 고객서비스기능비용의 세부계정별 역무별 분류내역
11	공통자산 및 공통운영비 배부명세서	공통자산의 취득가액/장부가액 배부명세서 및 공통운영비 배부명세서
12	형태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형태별 유무형자산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내역
13	기능별 유형자산등 감가상각비 명세서	기능별 유무형자산의 취득가액 및 감가상각비 내역
14	감가상각비등의 역무별 명세서	감가상각비 등의 역무별 배부명세서
14-1	감가상각비등의 형태/기능별 명세서	감가상각비등의 형태/기능별 내역
14-2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역무별 명세서	감가상각비 등의 형태/역무별 내역
15	유형자산등 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유형자산등 기능/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15-1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취득가액 명세서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취득가액 명세서
15-2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취득가액 명세서
16	유형자산등 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유형자산등 기능/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16-1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장부가액 명세서	유형자산 등의 형태/기능별 장부가액 명세서
16-2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유형자산 등의 형태/역무별 장부가액 명세서
17	영업통계 명세서	역무별 수익, 비용, 요금기저, 투자보수 등의 회계분리결과와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고용인원수 등의 활동자료
17-1	영업통계 명세서(배부기준 변경전)	배부기준 변경전 영업통계 명세서
17-2	영업통계 명세서(배부기준 변경효과)	영업통계 명세서(배부기준 변경효과)
18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영업보고서 경영자 확인서

제 3 장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해외사례

제 1 절 영국

1. 영국의 전기통신 규제회계의 법적근거

가. 유럽 공동체 통신산업에 관한 지침 (European Community Communications Directives)

유럽공동체 EU는 EU내 전기통신산업의 신규사업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효과적인 경쟁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다음의 5개 지침들(이하 'EU지침')을 제정하였다.

<표 3－1> 유럽공동체 통신산업에 관한 5가지 EU지침

Directives (지침)	주요내용	연도
① 규제체계 지침 (the Framework Directive)	• 회원국들이 국내 정보통신 정책 수립시 반영하여야 하는 기본 골격을 제시하고, 네트워크 관련 법체계 및 규제체계 일원화를 권고함 •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체제 확립을 위해 Ofcom 등의 통신규제기관이 전기통신시장 규제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함	2002년 3월 7일
② 인가에 관한 지침 (the Authorization Directive)	•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망과 서비스의 인가 규정과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가(general authorization), 이용권(right of use), 행정요금 및 이용수수료에 대해 명시함	2002년 3월 7일
③ 보편적 서비스 지침 (the Universal Service Directive)	• EU 역내 주민들의 최소한의 통신이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의 원칙, 제공범위, 비용보전 등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명시함	2002년 3월 7일
④ 접속에 관한 지침 (the Access Directive)	• 네트워크나 관련 설비에 대한 접근, 상호접속을 하려는 사업자들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2002년 3월 7일
⑤ 프라이버시에 관한 지침	• 전기통신 분야에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동등수준의 기본권리 및 자유를 보장하고, 공동체 내	2002년 7월 12일

(the Privacy Directive)	에서 전기통신 장비 및 서비스와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보장하도록 규정함	

*출처: EU 규제체제 및 영국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분석, KISDI, 2005

나. 커뮤니케이션 법 (Communication Act) 2003

유럽 전역의 전기통신규제체계를 조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된 EU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된 영국의 Communication Act 2003은 영국의 방송/통신법으로서, Part 1에 따라 Ofcom (The Office of Communications, 이하 'Ofcom')에게 방송통신산업의 전반적인 규제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Communications Act 2003은 또한 해당 법안의 Chapter 1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원가정보 제공 및 회계분리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다. Ofcom의 자문서 (Consultation)

Ofcom은 2004년 4월 8일, EU 지침에 근거한 규제재무정보 활용방안에 관련된 자문서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 의무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where SMP has been demonstrated)'을 발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재무보고 의무' 자문서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2004년 7월 22일, 'BT와 Kingston의 규제재무보고 의무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라는 제목의 자문서 최종본을 발간하였고, 2005, 2006, 2007, 2008, 2010, 2011년에 걸쳐 필요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정/보완 되었다.

<표 3－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에 관련한 자문서

발간 자문서	발간일
①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where SMP has been demonstrated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T와 Kingston의 규제재무보고의 의무)	2004년 4월 8일
②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BT와 Kingston의 규제재무보고 의무)	2004년 7월 22일
③ Changes to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framework (BT의 규제재무보고에 대한 변경사항)	2005년 8월 31일
④ Changes to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quirements (BT 규제재무보고 및 감사의무에 대한 변경사항)	2006년 8월 16일
⑤ Changes to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quirements (BT의 규제재무보고 및 감사의무에 대한 변경사항)	2007년 5월 30일
⑥ Changes to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2006/2007 (BT의 규제재무보고 의무에 관한 변경사항 2007~2007)	2007년 7월 31일
⑦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 changes to BT's 2007/08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BT의 규제재무보고-BT의 규제재무보고서에 대한 변경사항 2007~2008)	2008년 4월 17일
⑧ Changes to BT and KCOM's regulatory and financial reporting 2009/10 update (BT와 KCOM의 규제재무보고에 대한 변경사항 2009~2010)	2010년 2월 10일
⑧ Changes to BT and KCOM's regulatory and financial reporting 2010/11 update (BT와 KCOM의 규제재무보고에 대한 변경사항 2010~2011)	2011년 2월 11일

출처: http://www.ofcom.org.uk/consult/ 참조

Ofcom은 위 자문서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주로 BT)에게 2009년까지 다음의 3가지 의무를 부과하였다. 첫째, 도매사업 원가회계 정보 제공의 의무, 둘째, 소매사업 원가회계 정보 제공의 의무, 셋째,. 회계분리의 의무이다. 그러나, 2009년 Change to BT and KCOM's regulatory and financial reporting 2009/10 update 자문서에서 Ofcom이 소매전화(retail call)시장과 초고속인터넷소매시장(the fixed narrowband retail service)시장상황을 검토한 결과, BT가 개인고객시장과 기업고객시장에서 더 이상 시장지배력사업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BT는 규제회계보고를 하는데 있어 소매시장과 관련된 재무보고의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

게 되었다.

2. 자문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 의무” 내용

가. 규제재무보고 의무 개요

(1) 규제재무보고의 필요성 및 목적

규제재무(회계)정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래와 같은 상황일 때 필요하다. 첫째, 사업자가 원가에 근거한 요금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둘째, 요금규제의 의무가 있고, 혹은 비차별적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공정한 상호보조(e.g. margin squeeze)의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2) 규제재무보고서의 활용방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정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사업자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위한 추세분석과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수익성 분석, 활동기준원가의 원가동인(cost driver)의 이해, 정확한 분석을 위한 재무 모델링 강화와 사업자 간 분쟁 발생 시, Ofcom의 중재역할 결정을 위하여 활용된다.

(3) 규제재무보고의 기대효과

효과적인 규제재무보고의 의무는 전기통신시장의 공정경쟁환경 조성 외에, 군소사업자에게 Ofcom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비차별적 행위에 대해 규제하고 있음을 확신시키고, 군소사업자에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원가에 근거한 요금을 산정하고 있음을 확신시키며, 신뢰성 있는 정보에 근거하여 사업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다.

(4) 규제대상 사업자

EU 지침에 따라, Ofcom은 시장 환경의 변동에 따른 적절한 규제를 위해 정기적으

로 통신시장에 대한 경쟁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영국 통신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British Telecom(이하 BT)과 Kingston Communications(이하 KCOM)등 세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2개에 사업자에게만 규제재무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5) 규제대상 시장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시장별 경쟁상황 검토과정을 거쳐 BT와 KCOM이 규제재무보고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시장을 Ofcom이 선정하며, Ofcom은 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시장을 규제대상 시장으로 선정하고 있다.

(6) 규제재무보고와 일반재무보고의 차이점

규제재무보고는 규제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원가, 매출, 자산, 부채를 규제대상 시장(서비스)에 따라 구분하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점에서 일반재무보고와 차이가 있다. 규제재무보고에서는 상품, 서비스, 시장, 활동, 원가요소 등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규제재무 보고와 일반재무보고의 주요 차이점은 일반재무보고는 역사적 원가주의에 근거하는 반면, 규제재무보고는 현행 원가주의에 근거하여 정보를 산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규제재무보고는 장기증분원가방식(LRIC: long-term incremental cost)을 완전배분원가방식(FAC: fully allocated cost) 및 독립원가방식(SAC: stand alone cost)과 함께 사용해야 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재무보고와 차이점이 존재한다.

나. 규제재무보고 의무사항

Ofcom은 Communication Act 2003에 근거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규제재무보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Ofcom의 권리는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장에서만 유효하며, 사업자의 시장지배력이 검증되면

Ofcom은 다음의 의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표 3－3>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에 관한 의무

Communication Act	의 무	목 적
87(9)~87(11)	도매시장의 원가회계	요금 규제 원가 근거 요금산정 원가 보상
91(5), 91(6)	소매시장의 원가회계	요금 규제
92(2), 92(3)	소매시장 비 원가 이행조건	전용회선의 최소판매단위에 대한 규정
87(7), 87(8)	도매시장의 회계분리	부적절한 차별 금지 불공정한 상호보조 금지
87(6)(b)	정보제공	투명성 확립

출처: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in markets where SMP has been demonstrated", Ofcom, 2004 참조

(1) 도매사업 원가정보 제공의 의무

Communications Act 87(9)와 87(11)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도매시장에서의 망 접속 제공(provision of network access), 관련 망 사용(use of the relevant network) 및 관련 설비의 이용가능성(the availability of relevant facilities)에 관련된 원가회계정보제공 의무와 요금규제, 원가 및 원가보상에 근거한 요금산정(obligations for recovery of cost and cost-orientation)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2) 소매사업 원가정보 제공의 의무

Communications Act 91(5)와 91(6)에 따라, SMP(Significant Market Power) Market과 Ofcom이 규제 하는 시장의 서비스 이용자를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적절한 원가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매년 감사 받은 규제원가회계시스템 (regulatory cost accounting systems)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규제의무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Communications Act 92(2)와 92(3)에 따라, Ofcom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원가회계의무와 별도로 전용회선(the minimum set of leased lines)의 최소 판매단위에 대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3) 회계분리의 의무

Communications Act 87(7)과 87(8)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전기통신 산업의 공정경쟁 체제 확립을 위해, 망접속 제공(provision of network access), 관련 망 사용(use of the relevant network) 및 관련 설비의 이용가능성(the availability of relevant facilities)과 관련하여 회계분리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BT에게 부과된 규제재무보고의 의무

(1) BT의 규제재무보고 이행조건[1)]

Ofcom은 도매/소매 시장의 원가정보 제공 및 회계분리의 의무에 대한 규제재무보고의 이행조건 (condition)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제재무보고 이행조건은 BT가 따라야 할 규제재무보고의 일반원칙 및 절차 (OA1~OA34)를 제시하고, BT가 Ofcom에 제공해야 할 회계 및 원가정보에 대해 설명한다.

<표 3－4> BT의 규제재무보고의 조건

목 록	주 요 내 용	해당조건
① 일반적 필수요구 사항	Ofcom은 BT에 대한 규제권한이 있으며, BT는 규제를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OA1~OA4
② 규제재무보고서	BT는 감사인 의견이 반영된 보고서를 Ofcom에 제	OA5~OA11

1)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in market where SMP has been demonstrated - Accounting Separation and Cost accounting; Final notification and explanatory statement; Part 2, Consultation, Ofcom, 2004,

의 작성/감사/공표	출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BT는 현행원가방식에 근거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에는 동일한 회계방침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비교 가능한 전년도 데이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③ 규제재무보고서의 감사	BT는 Ofcom이 만족할 만한 규제 감사인을 고용해야 한다. 감사인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Ofcom은 BT에게 감사인 교체를 제시할 수 있다.	OA12~16
④ 중요 회계 문서[2] 및 부차적 회계문서[3]	BT는 규제재무보고서 공표 전에 주요 회계문서 및 부차적 문서를 Ofcom에게 먼저 제공해야 한다.	OA17~20
⑤시스템 및 회계문서의 형식과 내용 개선	BT는 필요에 따라, 규제회계시스템과 회계문서 및 규제보고서의 형식 등을 개선할 수 있다.	OA21
⑥규제재무보고의 수정	Ofcom은 BT가 제출한 회계문서 및 규제재무보고서에서 결점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정 및 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OA22
⑦정보 보존	BT는 역사적 원가주의 및 현행 원가주의에 근거한 회계분리 자료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A23~OA24
⑧요청에 따른 회계정보 제출	BT는 요청에 따라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회계 및 보고 자료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OA25
⑨도매시장 서비스	BT는 주기적으로 도매시장 서비스 및 활동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항목을 수정하여야 한다.	OA26~28
⑩소매시장 서비스	BT는 주기적으로 소매시장 서비스 및 활동 등을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 항목을 수정하여야 한다.	OA29~OA31
⑪추가적 회계분리 의무	BT는 회계분리 된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함	OA32
⑫공정경쟁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에서 BT는 비차별적 transfer charge를 제시해야 함	OA33~34

2) Primary Accounting Documents: 회계방침, 배분방식, 규제회계원칙, 장기증분원가 방식 등을 설명한 문서

3) Secondary Accounting Documents: 규제재무보고서 작성 시, Primary Accounting Documents와 함께 사용하는 회계방침 및 원가, 매출, 자산, 부채 등의 계산방식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문서

(2) BT의 규제재무보고 방침 (Directions)

Ofcom은 Communications Act 49(4)에 따라, BT의 규제재무보고 조건 OA1~ OA34를 뒷받침 하는 6가지 방침을 제시한다.

① 방침1: 망구성 요소 (Network Components)

BT는 규제재무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해야 할 망 구성 요소 목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② 방침2: 투명성 (Transparency)

조건 OA1~OA34에 따라 BT가 제출하는 데이터, 정보, 문서 및 규제재무보고서는 Ofcom이 부여한 의무(도매/소매 시장의 원가정보 제공 및 회계분리의 의무)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정보이용자에게 신뢰성을 전달해야 한다.

③ 방침3: 규제재무보고서의 작성, 감사 및 공표 (Preparation, audit, delivery and publication of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Communications Act에 근거하여 Ofcom은 BT에게 규제재무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BT는 Ofcom이 제시한 조건 OA1~OA34을 만족시키는 도매/소매 시장의 원가정보 제공 및 회계분리의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BT는 규제재무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를 받아야 하며 Ofcom에 전달해야 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④ 방침4: 규제재무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Form and contents of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Ofcom은 BT가 제출하는 규제재무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자세한 형식 및 내용은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 changes to BT's 2007/08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의 Annex에 첨부하고 있으며, BT가 이행조건 OA7과 OA21에 따라 보고서의 형식 및 내용을 수정하여 Ofcom에 보고하지 않는 한, BT는 Ofcom이 정의한 보고서 형식을 따라야 한다.

⑤ 방침5: 규제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의견의 공정성 (Form of the 'Fairly Presents in Accordance with audit opinion' for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Ofcom은 BT의 규제재무보고서의 감사의견이 'FPIA'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첫째, '규제재무보고서가 조건 OA5에 근거하여 작성이 되었는가?'와 둘째, '규제재무보고서가 주요 회계문서(Primary Accounting Documents)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가?' 이다

⑥ 방침6: 규제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절차의 적정성 (Form of the 'Properly Prepared in Accordance with audit opinion' for Regulatory Financial Statements)

Ofcom은 BT의 규제재무보고서의 감사의견이 'PPIA'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BT의 보고서가 회계문서에 근거하여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⑦ 규제재무보고 외의 준수사항

규제재무보고의 조건 및 방침에 따르면 BT는 주요 규제재무보고서 작성 외에 첫째, 규제재무보고서 작성의 방법론 (methodology documents)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고, 둘째, 감사 및 외부공시 대상이 아닌 세부 원가분석자료를 Ofcom에 추가적으로 제출하며 셋째, Ofcom이 요금상한제 검토 및 연구에 관련한 자료 분석을 위해 BT의 자료적출시스템 (data extraction tool)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Ofcom은 BT의 원가자료를 적출, 분류,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3. BT의 규제재무보고서 2011 분석

가. 규제재무보고서 2011 분석

(1) 규제재무보고서 개요

BT의 규제재무보고서는 요금규제, 원가에 근거한 요금산정, 공정경쟁 등을 위해 BT가 이행하고 있는 규제의무(e.g.회계분리)를 보여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SMP Market과 관련된 원가정보,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 BT의 하위사업자에게 청구되는 요금(price charged to downstream part of BT)과 제 3의 사업자에게

청구되는 요금(price charged to third parties)의 상관관계

- 규제의무와관 련된 주요활동 성과지표 (key performance indicators)
- 원가배분과정에서 사용되는 BT의 회계프로세스 및 회계방법론

BT가 규제재무보고의 의무에 따라 Ofcom에 제공하는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3－5> 규제재무보고서 주요내용[4)]

목차	주요내용
1.Introduction to the Current Cost Financial Statements (현행원가 재무보고의 개관)	introduction : Regulation in the UK (영국의 규제에 대한 개관)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 (규제재무보고 의무) Regulatory Financial Review (규제재무보고 검토) Statement of Responsibility (작성책임에 대한 서술) Audit Report (감사보고서) Basis of Preparation (재무제표 작성원칙) -Consolidated Performance Summary, including income, operating cost and capital cost for wholesale, access markets (각 시장별 연결 손익계산서) Wholesale Financial Performance (도매시장 재무성과) - Attribution of Wholesale Current Cost (현행원가기준 비용/원가보고서) - Attribution of Wholesale Current Cost Mean Capital Employed Statements (현행원가기준 평균투하자본보고서)
2. Review of Wholesale Access Markets (도매 가입자 망 접속시장 검토)	Financial Performance in Access Markets, including income, operating cost and capital cost (가입자 망 접속시장 손익계산서) Access Markets Review, including similar information for each of the access markets (각 시장별 검토결과 정리)
3. Review of Other Wholesale Markets (가입자 망 접속시장 외 도매시장 검토)	Financial Performance in Other Wholesale Markets, including income, operating cost and capital cost (가입자 망 접속시장 외 도매시장 손익계산서) Other Wholesale Markets Review, including similar information for each of the wholesale markets (각 시장별 검토결과 정리)

4) Current Cost Financial Statement for 2011 including Openreach Undertaking, BT Plc, 2011

4.Reconciliation Statement (조정 보고서)	BT Reconciliation statements (BT 조정 보고서) BT Reconciliation Statement 2011 BT Reconciliation Statement 2010 (Restated) BT Reconciliation Statement MCE
5.Openreach Information (오픈리치에 대한 정보)	Openreach Income Statement 2011 (오픈리치 손익계산서 2011) Openreach Income Statement 2010 (오픈리치 손익계산서 2010) Openreach MCE Statement 2011 (오픈리치 평균투하자본 보고서 2011) Openreach MCE Statement 2010 (오픈리치 평균투하자본 보고서 2010) Reconciliation of Openreach income statement 2011 (오픈리치 조정손익계산서 2011) Reconciliation of Openreach income statement 2010 (오픈리치 조정 손익계산서 2010)
6. Other Information (기타)	-Network Activity Statements (네트워크 활동 보고서) -Calculation of FAC based on component costs and usage factors (완전배분원가 산정법) -BT Network services reconciliation (BT네트워크 서비스 조정) -Price Control Statements in the Wholesale Markets (도매시장 요금규제 보고서)

(2) 규제재무보고와 관련된 BT의 이행의무

BT는 유럽공동체 통신산업에 관한 지침과 Communications Act 2003에 근거한 규제제도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지배력 있는 시장에 대해 ①회계분리를 수행해야 하고, ②도매시장의 원가정보를 산정해야 하며, ③이들 정보를 외부에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① 회계분리의 의무

전기통신산업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확립하기 위해 회계분리가 필요하고, BT는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하고 투명한 원가 산정을 위해 회계분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 도매시장의 원가정보제공 의무

BT는 투명성 확립을 위한 요금/가격 규제, 원가기반 요금/가격 산정 및 recovery of costs 등과 관련된 원가정보를 Ofcom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BT가 제공하는 도매시장의 요금규제 보고서를 통해 Ofcom은 Network Charge Control (NCC) regime에 따른 연간 평균요금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으며, 또한 요금규제 보고서는 BT가 원가 기반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비 경쟁 시장에서 BT의 요금이 상한규제를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③ 재무정보 공개의 의무

BT는 회계분리 및 원가정보 제공 의무에 근거하여 작성된 규제재무보고서를 감사인 의견과 함께 외부에 공시하여야 한다.

(3) BT의 시장지배적 Market (SMP Market)

Ofcom은 주기적으로 BT의 시장지배력을 검토하고, BT의 SMP Market을 결정하며, BT의 2011년 SMP Market은 다음과 같다

<표 3－6> BT의 SMP Market

시장구분	서비스(세분시장)의 세분화
Wholesale Access Markets (가입자 망 접속 도매시장)	-Wholesale analogue exchange line services -Wholesale ISDN2 exchange line services -Wholesale residential ISDN2 exchange line services -Wholesale business ISDN30 exchange line services -Traditional interface symmetric broadband origination (up to and include 8Mbit/s) -Traditional interface symmetric broadband origination (above 8Mbit/s up to and including 45Mbit/s) -Traditional interface symmetric broadband origination (above 45Mbit/s up to and including 155Mbit/s) -Alternative interface symmetric broadband origination (up to and including 1Gbit/s) -Wholesale local access
Other Wholesale Markets (가입자 망 접속 외 도매시장)	-Call origination on fixed public narrowband networks -Single transit on fixed public narrowband networks -Technical areas (Interconnect Circuits) -Fixed call termination

	-Wholesale trunk segments -Technical areas (Point of Handover) -Wholesale Broadband Access : Market 1 -Wholesale Broadband Access : Market 2 -Wholesale Broadbadn Access 2010

(4) Openreach

최근의 2011년 규제재무보고서에는 2005년 9월 22일부터 적용된 Ofcom과 BT의 동의안에 근거한 Openreach의 정보가 별도로 공시되고 있다. Openreach의 손익계산서(P&L Statement)와 대차대조표(MCE Statement)를 공시하고 있으며, 이 재무제표는 모회사 BT의 재무제표와의 정합성 검토를 거쳐서 발표하고 있다.

(5) 외부 감사인 의견

BT는 영국 PricewaterhouseCoopers LLP (이하 'PwC)로부터 규제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PwC는 BT의 규제재무보고서가 현행원가에 근거하여 모순 없이 작성되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4. 영국 통신회계제도의 시사점

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Ofcom은 통신시장 경쟁평가를 통해 BT와 KCOM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선정하였고, 자문서(consultation)에 근거하여 두 사업자에게 규제재무보고의 의무를 부여하였다. 또한 정기적으로 행하는 시장검토과정을 통해 Ofcom은 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가진다고 판단되는 시장을 규제대상 시장으로 규정하였다.

나. 서비스의 세분화

BT의 경우, 서비스를 매우 세분화하여 보고하고 있으며(도매시장 18개) 서비스별 자산, 부채, 투하자본 및 원가 매출 정보를 상세히 제시하였다. 서비스 별로 외부

거래와 내부거래 사이에 요금차별이 없음을 증명하고, 서비스별 요금이 원가에 근거하여 적절히 산정되었음을 증명하였다.

다. 외부 감사인에 의한 규제재무보고서의 감사제도

사업자의 규제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외부 감사인(회계법인 등)에 의해 행하여 졌다. Ofcom은 담당 감사인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감사인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Ofcom은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문서 및 규제재무보고서에서 심각한 결점이 발견되었을 경우, 수정 및 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절 미국

1. 미국 전기통신회계기준의 법적근거

가. 통신법 (96 Telecommunication Act)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s 이하 'FCC')에서는 통신산업의 경쟁촉진과 보편적 서비스 확대를 목적으로 1934년의 통신법을 개정하였으며, 96년 연방통신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무선통신 / 방송 / CATV 사업자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 FCC를 국가의 전문기구로서 인정하여 통신산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전반적인 권한을 부여하였다.

③ Unbundled network의 pricing, 접속료 계산 및 보편적 서비스의 지원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TELRIC (Total element long-run incremental cost: 전체요소장기증분원가)에 근거한 방법을 채택하였다.

④ 시내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위해 장거리사업자등의 시내시장 진입 허용하였다.

나. 연방규정법 (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의 연방행정부가 발행하는 연방규정집은 미국 관보에 발표된 관련 규정을 기록한 것으로 주제별로 묶어서 분기별로 나누어 발간되고 있다. 연방규정집의 Tilte 47이 통신산업 및 FCC의 규제권한과 관련된 규정이며, 이 중 원가 및 회계분리에 밀접하게 관련된 Part는 Part 32, Part 64, Part 36, Part69 등이다. Title 4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3－7> Title 47의 주요 내용

Part	제목
0	Commission Organization (위원회 조직구성)
1	Practice and Procedure (방법 및 절차)
32	Uniform System of Account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통신사업자를 위한 통합계정체계)
36	Jurisdictional Separations Procedures (관할권 분리절차): Standard Procedures for Separating Telecommunications Property Costs, Revenues, Expenses, Taxes and Reserves for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43	Reports of Communication Common Carriers and Certain Affiliates (통신사업자의 보고서)
51	Interconnection (상호접속)
52	Numbering (넘버링)
54	Universal Service (보편적 서비스)
63	Extension of Lines, New Lines, and Discontinuance, Reduction, Outage and Impairment of Service by Common Carriers; and Grants of Recognized Private Operating Agency Status (통신사업자의 선로확장, 신설 및 단절과 서비스의 축소, 불능 및 손상)
64	Miscellaneous Rules Relating to Common Carriers (기타 규범)
65	Interstate Rate of Return Prescription Procedures and Methodologies (주간서비스 요금산정 절차 및 방법론)
68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전화 망에 대한 단말장비 접속)
69	Access Charges (접속료)

출처: 우리나라와 미국의 전기통신회계제도 주요 내용, KISDI, 2006 참조

2. 미국 전기통신회계분리 규제제도

가. 회계분리의 의무

(1) 회계분리의 필요성

규제권역 별(jurisdictional) 회계분리는 자산, 수익, 비용, 세금을 주내(intrastate) 서비스와 주간(intrastate) 서비스로 나누는 과정이다. 회계분리는 서비스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며, 회계분리 결과는 주간서비스의 요금결정, 주내서비스의 요금결정,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 산정 및 도매요금 산정의 원천 자료로 사용된다. 미국의 경우, 통신서비스에 투입되는 자산과 비용의 대부분이 주간서비스와 주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공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회계분리의 기본적인 목적은 기존전화사업자 (ILEC: incumbent local exchange carrier)들이 하나의 원가를 주간서비스 부분과 주내서비스 부분 양쪽에서 회수하는 것을 막는 것에 있다. 또한 가격상한제 실시를 위해 사업자의 역무 별 회계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가격상한제가 통신사업자의 원가 절감을 유도하다 보니 서비스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품질 및 시설 관련 통계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2) 회계분리 관련 체계 및 상호관계

미국 통신회계분리 규칙의 체계 및 상호관계는 다음 그림과 같이 도식화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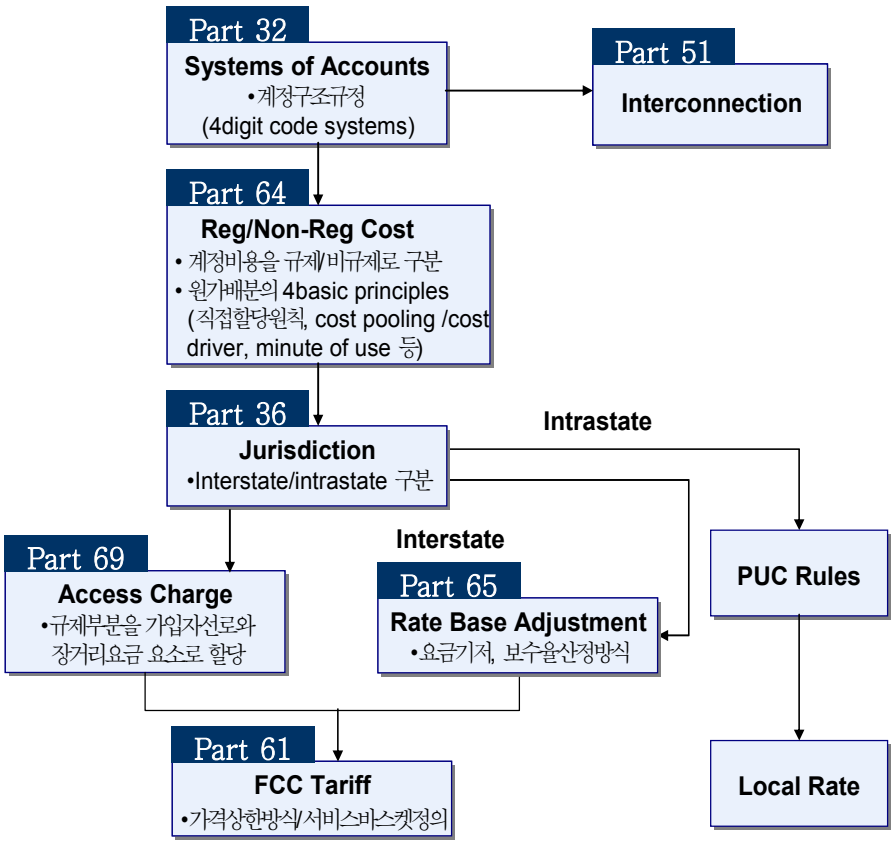
① Part 32: 계정체계(Systems of Accounts)

통일회계규칙에 대한 계정구조를 규정하며 설비계정은 형태와 기술수준(예: 디지털교환기와 광케이블)등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설비관련 비용은 고객영업비용 및 기업영업비용을 차별화하고 있다. 역사적 원가에 의한 재무회계시스템에 의해 운영결과와 재무결과를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을 따르고 있다.

재무회계와 연계하여 4자리 계정체계(code)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1xxx: 유동자산 및 비유동자산
- 2xxx: 고정자산
- 3xxx: 감가상각 및 상각
- 4xxx: 부채 및 주식
- 5xxx: 수익
- 6xxx: 비용
-7xxx: 기타 수입 및 세금

[그림 3－1] 미국 회계규칙의 상호관계



② Part 64: 규제/비규제 비용(Reg/Non Reg Cost)

Part 32의 계정비용을 규제부분과 비규제 부분으로 배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Part 64는 비규제서비스에 의해 규제서비스로의 상호보조를 감시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비규제서비스로는 내부회선유지서비스와 요금청구수납서비스 등이 있음) 규제영역서비스: POTS (plain old telephone service), 전용회선, 시내접속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원가배분방법의 4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1. 비규제영역에 의해 제공된 유료서비스는 정해진 요율로 부과
2. 원가는 가능하면 직접적으로 할당
3. 공통원가는 배부가 용이하도록 원가 집합(cost pool)으로 그룹화하고, 각 원가풀에 대해 원가동인 및 인과관계를 분석하여 배부기준을 정함
4. 직접적인 할당이 불가능한 원가, 사용시간 (minutes of use)을 사용하여 배분하는 원가 또는 간접적인 원가동인 요소로 배분하는 공통원가는 일반적으로 비규제/규제요소로 나누어 배분함

또한, FCC에서는 원가배분방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의 할당은 미래지향적 기준, 즉 향후 3년 간 최고사용량 추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2. 비용과 관련된 대부분의 설비는 직접적 할당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직접할당 혹은 배부된 비용의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3. 마케팅비용은 직접 할당하거나 가능한 한 배부하며, 나머지는 직접할당 혹은 배부된 비용의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4. 직접할당과 직접배부는 field reporting code, 보조계정, 보조회계기록 등을 이용하여 최대화시킨다
5. 인건비 추적을 위해서는 positive time 이나 exception time reporting을 이용한다.

Time reporting 과정은 CAM (Cost Allocation Manual)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생산적 시간 배분 방식 또한 CAM에 제시한다. 이러한 모든 규칙을 실행

한 결과는 규제/비규제 범주별로 원가를 할당하여, 규제영역별 분리과정 단계인 Part 36에 투입된다.

③ Part 36: 관할권(Jurisidiction)

규제부분의 비용을 주간 또는 주내 영역별로 배분하는 규정이다. 대부분 투자는 시내교환, 전송케이블 및 동선설비 등 유사형태의 기능별 범주로 구분한다. 범주는 넓은 의미에서 COE (Central Office Equipment: 중앙교환국 장비)와 C&WF(Cable and Wire Facilities: 케이블 설비)로 구분한다.

1. COE의 4개 범주: 교환원시스템장비, 탄뎀교환장비, 시내교환장비, 회선(Circuit) 장비

2. C&WF의 4개 범주: 시내회선설비 (local loop plant), 광역과 교환국간 전송, 장거리, 중앙 / 원격 메시지 등

이러한 설비범주의 원가배분은 사용량 (usage)을 기준으로 하며, 이와 비슷하게 고객영업비용은 Part 32 계정구조에 따라 기능별로 배분된다. 수익계정은 일반적으로 그 수익이 과금되는 요금을 기준으로 직접 할당하는 반면에 자산, 비용, 세금계정 등은 지원하는 설비 및 고객영업기능의 관계를 기준으로 배분한다.

④ Part 51: 상호접속(Interconnection)

ILEC의 추가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의무는 협상의 의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상호접속을 제공할 의무, 국사제공 의무 등이 포함된다. 접속료가 비차별적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미래지향적 경제적 비용인 총요소 장기증분비용(total element long-run incremental cost)에 기반하도록 한다. 모든 시내전화사업자(LEC)와 기존시내전화사업자(ILEC)의 재판매 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시내전화사업자간 통신트래픽의 전송과 착신을 위한 상호보상에 대하여 규정한다.

⑤ Part 61: 요금(Tariffs)

1989년에 FCC는 요금제도를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가격상한규제로 대체한다. 가격상한제는 일정한 서비스묶음(배스킷)의 평균요금에 대하여 매년 가격 변동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며, 상한은 물가지수, 생산성향성 목표치, 외생 비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결정 하며, ARMIS에 제출하는 회계분리 보고서가 요금규정의 근거자료로 쓰이기는 하나, 모든 ILECs는 의무적으로 전자식 요금표 공표를 이행해야 하며, 요금공표에는 요금과 규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요금표는 FCC의 Electronic Tariff Filing System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⑥ Part 69: 접속료(Access charge)

LECs와 장거리전화사업자(IXCs: interexchange carrier) 간의 주간접속료에 대한 규정으로, 가격상한규제를 받지 않는 LECs와 가격상한규제를 받는 LECs에 대하여 CCLC (common carrier line charge), 시내교환 및 전송, 정보, 인입설비, 탄뎀교한 및 전송, 직접중계전송, 전용회선, 보편적 서비스, 저소득층 보조, 신호망 이용대가, 기타 일회성요금 등 접속요소의 요금산정에 대해 규정하며, 서비스/기능 별 비용의 배분에 관하여 규정한다.

⑦ CAM (Cost allocation manuals : 원가배부지침)

Part 64에 따르면 보고서 43-03-Joint Cost Report 제출의 의무가 있는 ILECs은 규제/비규제 원가의 배분방식을 자세히 설명한 CAM을 FCC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CAM은 ILEC의 비규제 활동에 대한 설명, 규제회계를 받는 ILEC의 활동 목록, ILEC의 계열사 목록, 자회사와 ILEC의 관계증명 및 자회사에 대한 설명, 원가 배분 테이블 (비규제/규제 원가 분리시 사용된 원가 pools, 원가 배분 방식 및 배분 과정 등), Time reporting의 사용 방식 및 비생산적인 시간의 배분방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CAM은 매년 update 되어야 하며, 2년마다 한번씩 감사인으로부터 검증 받아야 한다.

(3) 회계분리 절차

미국 통신회계분리 절차는 ① 회사전체 손익계산서 (또는 재무제표)에서 Part 64를 적용하여 주간서비스이면서 규제 받지 않는 서비스를 제외시킨다. ② 다음으로 Part 36을 적용하여 주간서비스 이면서 FCC의 규제를 받는 서비스를 분리시킨다. ③ 다음으로 PUC 관할의 비규제서비스를 제외시키면 PUC가 관할하는 주내서비스의 회계분리결과가 도출된다.

(4) 회계분리보고서 종류 및 제출방식

① 회계분리보고서의 종류

일반적으로 FCC가 규정한 제출보고서의 양식이 40개에 이르나, ILEC의 수익과 가격상한제 적용 여부에 따라 사업자 별로 차등화된 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부과된다. 다음은 ARMIS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세부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표 3－8> ARMIS 제출 보고서 양식

보고서	세부양식
43-01	Table I-Cost and Revenue(Class A Account Level Reporting): 수익, 비용 계산서 Table I-Cost and Revenue(Class B Account Level Reporting): 수익, 비용 계산서 Table II-Demand Analysis: 수요분석서 Table III-Pole and Conduit Rental Calculation Information: 통신주와 임대관로
43-02	Table C-3 Respondent Corporate Information: 관련 회사 정보 Table C-5 Important Change During the Year: 기간 내 중요한 변경 Table B-1 Balance Sheet Accounts: 대차대조표 Table B-2 Statement of Cash Flows: 현금흐름표 Table B-3 Investments in Affiliated Companies: 관계사 투자 Table B-4 Analysis of Assets Purchased From of Sold to Affiliates: 관계사로부터 취득자산 분석 Table B-5 Analysis of Entries in Accumulated Depreciation: 감가상각누계액 분석 Table B-6 Summary of Investment and Accumulated Depreciation by Jurisdiction: 규제권역 별 감가상각누계액과 투자 요약

	Table B-7 Bases of Charges for Depreciation: 감가상각 대상액의 변화 Table B-10 Accounts Payable to Affiliates: 관계사 차입금 Table I-1 Income Statement Accounts: 손익계산서 Table I-2 Analysis of Services Purchased From or Sold to Affiliates: 관계사와 관련된 서비스 분석 Table I-6 Special Charges: 특별 요금 Table I-7 Donations of Payments for Services Rendered by Person Other than Employees: 외부의 서비스 대가 지급내역
43-03	Table I-Regulated/Nonregulated Data: 규제/비규제 자료
43-04	Table I-Separations and Access Data: 회계분리와 접속료 자료
43-05	Table I-Installation and Repair Intervals(Interexchange Access): 설치와 수리기간 Table II-Installation and Repair Intervals(Local Service): 설치와 수리기간 Table III-Common Trunk Blockage: 중계회선 차단 Table IV-Total Switch Downtime: 총교환기 고장 시간 Table IV-A-Occurrences of Two Minutes or More Duration Downtime: 2분 이상의 고장 발생 Table V-Service Quality Complaints: 서비스 불만
43-06	Table I-Summary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고객만족 설문
43-07	Table I-Switching Equipment Table: 교환설비 Table II-Transmission Facilities Table: 전송설비
43-08	Table I.A-Outside Plant Statics-Cable & Wire Facilities: 외부설비-선로설비 Table I.B-Outside Plant Statistics-Other: 외부설비-기타 Table II-Switched Access Lines in Service: 서비스 중인 교환접속회선 Table III-Access Lines in Service by Customer: 서비스 중인 접속회선 Table IV-Telephone Calls: 통화량
495-A	Table I-Forest Usage Schedule: 예상 사용 일정 Table II-Forecasted Investment Allocation Schedule: 예상 투자 배부 일정 Table III-Forecasted Investment Summary Schedule: 예상 투자 요약 일정
495-B	Table IV-Actual Apportionment of Investment Dollars Schedule: 실제 투자 일정 Table V-Actual Usage of Investment Units Schedule: 실제 투자 단위 사용 일정 Table VI-Actual Investment Summary Schedule: 실제 투자 요약 일정

② 회계분리보고서 제출방식

미국 회계연도 익년도 4월 1일 까지 직전 년도의 모든 보고서를 FCC의 ARMIS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전에 제출한 보고서의 수정내용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수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출자료 검증 및 감사

FCC CFR Title 47의 Part 64.904에 따르면, 보고서 43-03와 함께 CAM을 제출하는 사업자는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2년 마다 입증검사(attest engagement)를 받거나, 2년 마다 독립된 감사인에 의해 외부감사(financial audit)를 받아야 한다.

㉮ 입증검사 (attest engagement)

입증검사는 조사계약으로서 보고서가 산출되는 시스템, 프로세스 및 절차가 Joint Cost Orders (Docket No. 86-111), Accounting Safeguarding Proceeding (Docket No. 96-150) 및 FCC의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서화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착수 최소 30일 전, 감사인은 FCC에 감사프로그램을 제출해야 하고, 감사는 AICPA의 관련 기준을 따라 수행되어야 함

㉯ 일반외부감사 (Financial Audit)

일반외부감사는 사업자의 연차보고서에 제시된 자료가 기준 (위의 Docket 및 CFR의 해당규정)에 따라 중요성 관점에서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present fairly in all material respects)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실행국(enforcement bureau)의 chief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GAAP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감사보고서는 사업자의 연차보고서가 제시될 때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또한 FCC Docket DA 00-265에 따르면, 중간규모의 ILEC (Mid-Sized ILEC)은 CAM에 대하여 일반외부감사에 비해 부담이 덜 되는 입증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중간규모의 ILEC은 일반적으로 '표준경영자주장양식(model assertion letter)에 따라 제출한 CAM이 FCC의 규제 맞게 적절히 작성되었음을 입증한다. '표준경영자주장양식'은 입증검사를 수행한 '감사인 의견(attest opinion)'과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표준경영자주장양식'과는 별개로, 중간규모의 ILEC은 자사의 내부통제 (internal control)의 설계가 양호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영자보고서 (management representation letter)'를 제시해야 한다.

④ 제출자료에 대한 사업자의 증명

연간수익 $81억81백만 미만인 중간규모의 사업자의 경우, CAM의 검증 및 감사에 대한 의무는 생략되나, CAM이 CFR Title 47 Part 64.901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증명서는 사업자의 임원이 서약 하에 서명한 것이여야 한다.

3. 미국 통신회계제도의 시사점

가. 체계적인 법률체계

규제대상을 주내(intrastate)통신과 주간(interstate)통신으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규제기관이 각각 PUC와 FCC로 구분됨에 따라 규제권역별 회계분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법체계 면에서 연방규정집 CFR Title 47에 회계규칙을 포함시킴으로써 구속력이 강하고, 다른 규제와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법의 규정 수준에 있어서는 미국의 경우, Part 36, Part 34에서 기능별, 규제/비규제 서비스별 배부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보고서 양식에 해당 배부기준과 배부기준 수를 표시하도록 하여 공통원가의 배부 근거와 수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와 함께 요금, 접속료, 설비제공대가 등과 같은 회계정보를 이용하는 분야들이 논리적/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회계규칙이 조문식으로 되어있으나 관련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자세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나. 투명한 제도 운영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매년 통신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이를 공시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문식 회계규칙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모호한 규정들에 대해서 규제기관은 유권해석을 하고, Q&A의 형식으로 사업자의 회계규칙에 대한 질의에 신속히 답변하여 주고 이를 공개하여 실무적인 수행을 원활하게 한다.

다. 사업자 별 보고의 차등화

미국의 경우, 가격상한제 적용 및 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6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룹 별로 차별화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보고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40여개의 보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규칙이 사업자의 사업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통신사업자(ILECs)들은 자신들의 회계분리 및 배부기준에 관한 세부적 원가배부지침서(Cost Allocation Manual: CAM)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FCC는 제출된 CAM을 사전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라. 시스템을 이용한 보고서 제출 및 활용

미국의 경우는 FCC의 홈페이지의 ARMIS를 통하여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행정적 편의를 제공함며, ARMIS에 제출하는 회계분리 자료는 요금규제, 접속료 산정 및 보편적역무손실 보전금(USF: universal service fund)산정의 근거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요금규제와 USF 산정에 관련해서는 사업자가 별도의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요금규제: Electronic Tariff Filing System, USF산정: USAC 499A & Q Filing).

제 3 절 호주

1. 호주 전기통신 규제회계의 법적근거

가. 공정거래법 (Trade Practices Act) 1974, 151BU

호주정부는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위해 이 조항에 근거하여 Record-Keeping Rule (RKR)의 권한을 ACCC(Australian Competition and Customer Commission)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의 Part XIB, Division 6에 근거하여 ACCC는 공정경쟁을 위한 회계분리의 제도로서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이하, RAF)을 발전시켜왔다.

나. 통신경쟁법 (Telecommunication Competition Act) 2002

호주 정부는 2002년 12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stra에 대한 추가적인 회계 분리규제를 위해 이 법안을 제정하고, Telstra가 제공하는 도매/소매 사업 (wholesale, retail)에 대해서는 전체 회계분리의무(full accounting separation)가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경쟁활성화에 따른 공정경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Telstra에 대한 상호접속, 보편적 서비스 및 요금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 규제회계 규범체계 (RAF: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

Trade Practices Act 1974, section 151BU에 근거하여 2001년 5월 14일 ACCC가 발표한 도매/소매 서비스의 매출 및 원가 정보를 요구하는 회계분리규범체제를 도입하였으며, ACCC는 이를 통해 불공정 경쟁 방지 및 사업자간 분쟁 중재, 제출된 정보를 통해 사업자 간 공정경쟁 여부를 파악할 수 있고, 사업자 간 재무정보를 비교한다.

Trade Practices Act 1974 – ACCC (Accounting Separation Telstra Corporation

Limited) Direction (No.1) 2003 (이하 'Telstra Direction 2003')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stra의 소매/도매 사업에 대한 회계분리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2003년 6월 19일 호주의 문화부 장관이 제정한 지침으로서, 지침에서 규정한 Telstra의 주요 의무는 ① 현행 및 역사적 원가방식에 근거한 재무보고서 제출, ② 'Imputation testing' 수행 - Telstra의 소매 가격과 Telstra가 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도매요금을 비교 분석함, ③ 'Non-price terms and conditions' report 제출 - 비계량적 관점에서의 Telstra의 소매/도매 서비스 성과를 분석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2. 호주 전기통신회계분리의 규범체계

가. RAF (규제회계 규범체계)의 개요

공정경쟁 체제확립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RAF)는 ACCC가 지정한 Carrier와 CSP에게 회계분리의 의무를 부여하고, 회계분리 시 따라야 할 지침을 제공한다. 이러한 RAF의 주요내용은 ① 회계분리의 목적, ② 회계분리의무 사업자, ③ 회계분리 보고서의 유형 및 내용, ④ 회계분리 보고서의 감사절차이다.

나. 회계분리의 목적

RAF는 Carrier와 CSP가 도매, 소매 사업의 정보를 ACCC에 보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보고된 회계분리정보는 경쟁규제의 강화, 접속 분쟁의 중재, 그리고 신규 통신사업의 등장 과 기존 통신사업의 폐지/변화에 따른 장기적 효과 평가임을 명시하고 있다.

다. 회계분리의 의무

(1) 회계분리의무 사업자

RAF에 정의된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는 허가 받은 서비스를 제공, 혹은 이용하며, ACCC로부터 '회계분리보고 대상자'임을 공지 받은 Carrier 및 CSPs 이다. 2001년 5월 14일, ACCC는 Telstra를 포함한 5개 사업자 (Telstra, Optus, Primus, Vodafone, AAPT)를 RAF에 따른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로 선정하여 회계분리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2008년에는 3개 사업자(Telstra, Optus, Vodafone)만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로 선정하여 회계분리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stra만이 ACCC에 회계분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타 통신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회계분리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2) 규제회계 규범체계 (RAF)가 규정한 회계분리 보고서의 유형 및 내용[5)]

RAF 는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들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유형을 다음의 6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표 3－9> RAF 제출의 보고서 유형

I. Capital Adjusted Profit and Loss Statements (자본조정 손익계산서)	사업자는 자회사 및 타사에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로(each individual retail service, internal wholesale service and external wholesale service)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사업자는 서비스 별 매출 및 원가 정보를 보고해야 함 위 보고서의 목적은, ① 각 서비스의 매출의 source 파악 ② organization costs (조직비용), product and customer costs (상품 및 고객비용), network cost (네트워크 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와 비용의 파악 ③ capital employed statement (투하자본보고서)를 통해 cost of capital (자본비용)를 획득
II. Capital Employed Statements	사업자는 자회사 및 타사에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로 (each individual retail service, internal wholesale service and external

5) RAF Part 3, 4

(투하자본보고서)	wholesale service: 각 개별 소매서비스, 내부제공 도매서비스, 외부제공 도매서비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사업자는 서비스 별 투하자산 정보를 제공해야 함 위 보고서의 투하자산은 written down value[6]로 보고되어야 함
III. Fixed Asset Statements (고정자산 보고서)	사업자는 자회사 및 타사에 제공하는 각 서비스 별로 (each individual retail service, internal wholesale service and external wholesale service: 각 개별 소매서비스, 내부제공 도매서비스, 외부제공 도매서비스)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Capital Employed Statements (투하자본보고서)에서 사용한 동일한 기준을 이용하여 작성되어야 함
IV.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Report (WACC: 가중평균자본비용 보고서)	WACC 보고서는 각각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V. Service Usage Reports (서비스 사용 보고서)	retail service (소매서비스)의 사용량과 external wholesale service (외부제공 도매서비스)의 사용량을 보고해야 함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 별로 보고해야 함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는 위 5개 보고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ACCC에 반기별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는 회계연도 전체를 포함하는 위 5개의 연간 보고서를 ACCC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고서의형식(Format of Reports)는 모든 보고서는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회계보고의무 사업자가 연간 혹은 반기 보고서를 ACCC에 제출시, CEO / CFO는 인증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① 제출 보고서는 RAF 및 RKR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② RAPM (Regulatory Accounting Procedures Manual)이 RAF 및 RKR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 ③ RAPM이 RAF/RKR의 요구사항 및 사업자의 사업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개정되었음, ④ 제출 보고서는 감사재무제표 (audited statutory financial

6) Written down value는 현행원가에 근거한 장부가액을 의미하고, 이는 현행원가화 /재평가된 자산가액에서 과거의 감가누계 액을 차감한 금액임

statements)를 반영하였음의 4가지 내용에 대하여 증명 하여야 한다.

RAPM(Regulatory Accounting Procedures Manual : 규제회계작성지침)은 사업자가 규제계정 (regulatory accounts) 및 회계분리보고서를 준비하는 데에 있어 따라야 할 지침으로서, 사업자의 사업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update 되고 있는지 여부와, RAF에 따라 작성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를 받고 있다.

<표 3－10> RAF의 규제항목

구분	세부내용
사업자의 RAPM (규제회계작성지침) 규명항목	총계정원장 번호 (General Ledger Account Number) 총계정원장 해설서 (General Ledger Description) 배부원칙 (Allocation Principle) 배부방법 (Allocation Method) 배부동인 (Allocation Driver)
RAPM (규제회계작성지침) 포함 항목	보고서 작성에 있어, RAF가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지침서가 적용되는 모든 회사에 대한 목록 배분의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 조사, 분석모델에 대한 세부설명 적용된 모든 배분방식에 대한 설명 적용된 재무회계와 수행 방법의 세부설명 연간 변경된 정보수집방식에 대한 설명 Spreadsheet formula의 연간 변경된 사항들에 대한 세부설명
보고/ 제출 의무	RAPM은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로 ACCC에게 제공해야 함 사업자는 당 회계연도의 보고서 제출 2달 전에 RAPM의 초본(draft)을 ACCC에 제공해야 함 Carrier 와 CSP는 당 회계연도의 보고서를 ACCC에 제출 시, RAPM 최종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ACCC가 RAPM의 update 및 수정을 요청했을 시, 수정사항이 반영된 RAPM을 ACCC가 지정한 기간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함
작성시유의사항	-RAPM은 사업자와 관련된 모든 관계회사의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를 포함해야 함 관계회사의 조직도 (Organizational Char)t는 Key business units 과 각 business unit의 항목들을 제공해야 함 RAPM의 각 페이지에는 최종 수정된 연도 및 날짜를 기입해야 함 RAPM은 Manual Guidelines 을 따라야 함 사업자는 RAF 및 매뉴얼과 관련된 담당자를 내부에서 지정해야 함

(3) 보고서의 활용

각 사업 별(retail, internal wholesale, external wholesale) 매출 및 원가, 자산, 자본비용, 사용량 등을 포함하는 Capital-adjusted profits statements, Capital employed statements, Fixed Asset statements, Usage report를 활용하여, ACCC는 사업자별 혹은 산업 별 정보를 비교 분석하고, 서비스의 총 성장률과 변화를 예측한다.

(4) 회계분리 보고서 및 RAPM (규제회계 작성지침)의 감사

회계분리보고서에 대하여, 회계분리의무 사업자들은 매년 자체 비용으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보고서를 ACCC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감사는 반드시 호주회계감사기준 (Australian Auditing Standards)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회계분리보고의 감사는 license를 위한 필수 요건이며, 드문 경우이지만 감사보고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license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① 감사보고 계획서 (Audit terms of reference)

㉮ ACCC가 특정감사범위(certain audit terms of reference)를 요구할 경우회계연도가 끝난 후 7일 내에, ACCC가 외부감사에 대한 특정감사범위(certain audit terms of reference)를 요구할 경우, Carrier와 CSP는 요청에 따라 특정감사범위를 포함한 감사보고 계획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ACCC의 요청에 의해 작성된 특정 감사보고 계획서는 당해 감사 및 향후 감사 수행 시, 계속해서 준용되어야 한다.

㉯ ACCC가 특정감사범위(certain audit terms of reference)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 ACCC가 특정감사범위를 요구하지 않은 Carrier와 CSP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4일 내에, 감사보고 계획서 초안을 ACCC에게 제공해야 하며, 감사보고 계획서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ACCC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21일 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감사보고 계획서에는 감사의 목적, 감사인 의견표명 형식 (format of the auditor's opinion), 감사 보고의 필수요소, 그리고 감소보고 계획표 (time table)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감사 내용 (Content of audit)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의 범위 (scope and coverage of the audit)와 감사 범위 및 목적의 적용 방법 (how the audit scope and objectives have been applied)및 사업자의 보고서가 RAF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감사인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감사에 대한 ACCC의 권한 및 의무사항

ACCC는 Carrier 와 CSP에게 감사보고 계획서에 따른 보고서 및 RAPM의 추가감사(ad-hoc audit) 비용은 사업자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것과 ACCC가 최초감사에 대해 부적절 판단을 내렸을 경우에 시행해야 하는 재 감사(re-audit) 비용 또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 및, RAF에 따른 최초 감사 및 추가 / 재 감사 수행을 위해 특정한 외부 감사인과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ACCC는 앞에서 서술한 사항을 요구하기 위해 추가감사 요구에 대한 이유, 재감사를 요청할 경우, 최초감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 특정한 감사인과의 계약을 요청한 이유를 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규제회계 규범체계 (RAF)에 따른 Telstra의 회계분리보고서(2010년 7월~12월) 분석

Telstra의 회계분리보고서는 RAF 및 2003년 6월 19일에 공표된 'Telstra Direction 2003'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 역사적 원가 방식으로는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는 네트워크 망 구성 비용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현행원가 방식이 도입이 되었으며, 회계분리보고서는 역사적 및 현행원가 방식 모두에 근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Telstra가 작성하는 회계분리보고서는 Fixed Asset Statement, Capital Employed Statement, Profit and Loss Statement이며, 이들 보고서는 '현행원가방식 재무보고서'라고도 칭한다. 이는 보고서의 원가정보는 완전배분방식 (fully distributed basis)에 근거하여 산정하며, 접속료 산정에 있어서는 전체서비스에 대한 장기증분방식(TSLRIC: total service long-run incremental cost)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1) 회계분리보고서의 주요서비스

'Telstra Direction 2003'에 근거하여, ACCC는 Telstra의 주요 서비스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며,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① Domestic PSTN Originating and Terminating Access Service (국내 PSTN(Public Switched Telephone Network) 착/발신 접속서비스)

② Unconditioned Local Loop Service (ULLS: 가입자 망 제공서비스)

③ Local Carriage Service (시내 전송서비스)

(2) 회계분리보고서의 정확성 및 감사여부

RAF에 따라 회계분리보고서는 매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Telstra가 RAF를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한 지에 대한 여부
- Telstra가 RKR에서 규정한 ACCC의 절차상의 필수요건을 이행했는지 여부
- Telstra가 RAF의 ACCC 기본절차를 따른 지에 대한 여부
- 역사적 원가가 현행원가로 적절히 조절되었는지의 여부
- Telstra가 RAPM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필요에 의해 개정되고 있는지의 여부 등

각 회계분리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회계연도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가 끝나고 행해질 예정이며, 위 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ACCC는 Telstra가 제출한 보고서의 정확성 및 RAF-RKR과의 부합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을 유보하였다.

4. 호주 통신회계제도의 시사점

가. 체계적인 규제회계 규범체계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 RAF) 제공

ACCC는 Telstra를 포함한 규제대상 Carrier와 CSP가 회계분리 및 회계 규제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자세하게 작성된 RAF와 RKR을 사업자들에게 제공함하며, RAF는 규제회계의 목적/대상자, 제출 보고서에 대한 상세 설명, 보고서의 근거자료인 매뉴얼에 대한 상세 설명, 보고서의 감사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나. 보고서 제출의 차별화

ACCC는 사업자에게 규제의 정도에 따라 차별화된 보고의 의무를 부과하며, ACCC는 Telstra와 같이 시장 지배력을 가지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며, 규제회계를 강화하고 있다.

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stra에 대한 차별적 규제

ACCC는 2003년, ‘ Accounting Separation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Direction (No.1)’를 발간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Telstra에 대한 규제회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라. 역사적 / 현행원가에 근거한 자료 제출

호주의 통신회계제도는 규제회계보고서 제출 시, 역사적 원가에 근거한 자료와 현행원가에 근거한 자료 모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외부 감사인에 의한 규제회계 보고서의 감사제도

사업자의 규제회계보고서에 대한 감사는 외부 감사인 (회계법인 등)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며, 사업자는 감사보고서를 비롯하여 감사보고 계획서 또한 ACCC에 제출/승인 받아야 하고, 제출한 감사보고서가 적절치 못하게 작성되었을 경우, ACCC는 사업자에게 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바.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의 의사소통

사업자와 규제기관의 공식적인 Q&A 제도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Telstra의 경우에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규제기관과 대화를 나누는 등, 사업자와 규제기관 사이에 비교적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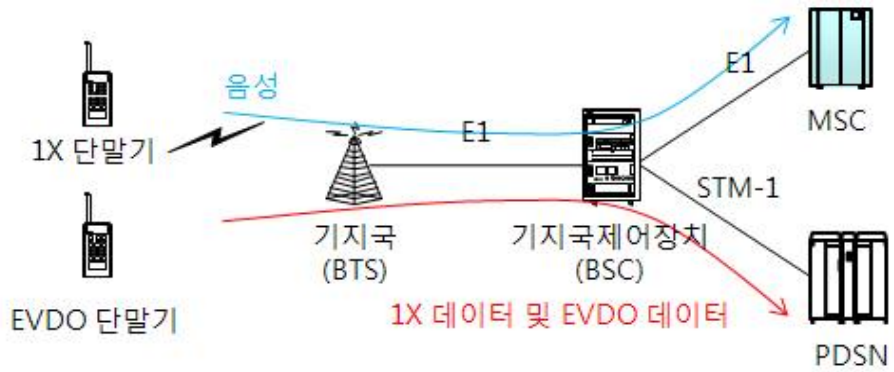
제 4 장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방안 연구

제 1 절 이동통신망 개요 및 선행연구

1. 이동통신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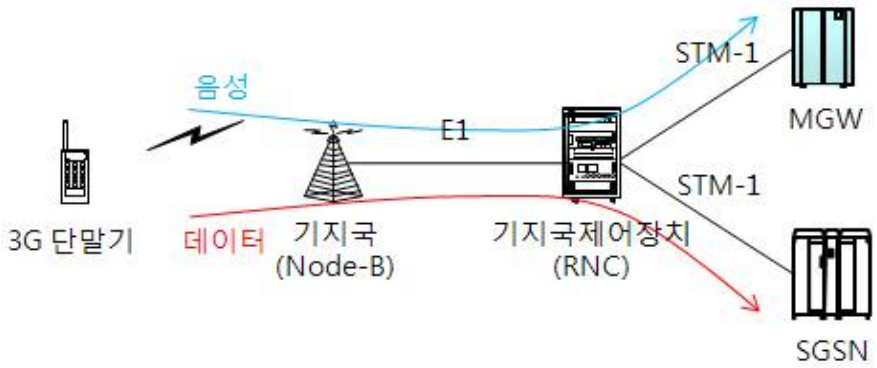
이동통신망은 CDMA2000-1X망, EVDO망 및 3G망으로 구분가능하다. 이중에서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하는 망은 CDMA2000-1X 및 3G 네트워크이다. CDMA2000-1X는 기존의 IS-95B망에서 진화한 IS-95C망을 이용하여 기존 IS-95A/B망에서 지원했던 속도인 14.4Kbps나 56Kbps보다 빠른 최고 144Kbps로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서비스이다. CDMA2000-1X부터는 이전에 IWF를 통해야만 가능했던 데이터망 접속을 BSC에서 바로 PDSN으로 연결하여 가능케 했다. EVDO는 HDR(High Data Rate) 프로토콜을 근간으로 제정된 방식으로 데이터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KT와 SKT는 CDMA2000-1X 장비를 공유하고 채널카드만 1X EVDO카드로 교체하는 FA증설형으로 망을 구성하였으며, LGU+는 1X망과는 별도로 EVDO망을 구축하는 오버레이형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1] CDMA2000-1X/EVDO 망 구성도



3G는 확장된 주파수 대역폭(5Mhz)을 기반으로 음성서비스, 고속 회선 데이터 서비스, 고속 패킷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대용량의 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응용한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림 4－2] 3G 망 구성도



최근 2G에서 3G로 가입자가 전환을 가속하고 있고, KT의 경우 '12년 3월 19일부터 2G이동통신서비스를 완전 종료할 방침이다. 그리고 2G의 데이터량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으며, 2G의 데이터통화량도 대부분 EVDO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의 주요 대상은 3G망이다. LGU+의 경우 '08년이후 출시되는 단말기는 거의 100%가 Rev.A이므로 1X망에서의 데이터 트래픽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Rev.A 단말기를 사용하는 LGU+의 가입자가 1X 및 Rev.A 커버리지 내에서 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할 경우, 100% Rev.A 망에서 처리한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음성데이터 회계분리의 핵심인 3G망 요소 세분화를 통한 회계분리모형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선행 연구

음성·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를 위한 선행연구로는 가입자접속부분을 정의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었으며 이동망의 배부기준을 명확한 제시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유선망에서의 가입자선로는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원가가 증감하지 않고 가입자의 증감에 따라 원가가 증감하는 NTS(Non Traffic Sensitive)원가이다. 이동망에서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통화량의 증감에 따라 변동하지 않는 가입자선로유사설비 항목을 식별하는 것은 이동망 서비스별 회계분리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증감에 따라 통화량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 원가에 해당하는 가입자선로유사설비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원가동인을 파악하여 가입자선로유사설비의 서비스별 배부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이동망 서비스별 원가산정의 기초가 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기능적 관점에서의 가입자접속부문에 대한 대안적 정의를 제시하였다. 김문수(2003)는 CDMA 이동통신망을 대상으로 BTS, BSC, MSC 등의 서브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통해 기능중심의 접속망(Access Network) 개념을 확립하였다. 연구결과 BTS의 4가지 서브시스템중 BCP의 호처리 부분은 서비스노드(코어망, core network)에 해당하며 다른 부분들은 가입자접속망(AN, access network)에 해당하고, BSC는 4가지 서브시스템중 하나인 CIN중 트래픽관련 부분과 CCP중 호통제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입자접속망(access network)에 해당한다. MSC는 대부분 서비스노드(SN) 기능을 수행하지만, CCS중에서 LRS(VLR)의 이동성 및 서비스관리를 위한 MAP기능은 가입자접속망(access network)에 해당한다.

정충영(2004)은 액세스서비스를 언제 어디든지 호를 송수신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였으며 커버리지 비용중에서 최소커버리지 비용과 증분비용중에서 가입자증분비용을 액세스비용으로 보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한편 기능적 관점을 이용한 기존연구와는 다르게 김문수(2006)는 기능별(function type), 투자형태별(investment requirement), 소모동인별(main exhaust driver) 등 3가지 조건을 통해 CDMA시스템에서의 TS(traffic-sensitive)와 NTS(non-traffic-sensitive)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개별항목들을 TS와 NTS로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3가지 조건 모두 NTS의 성격에 해당한다면 Strong-NTS로 분류하고, 3가지 조건 모두 TS의 성격에 해당한다면 Strong-NTS로 분류된다. 연구결과 BTS의 RF unit은

strongly-NTS로 분류하였고 BTS의기타 구성요소는 Mixed로 분류. BSC는 Mixed로 분류하였다.

박준호・강병민(2007)은 통화량 증감과 관계없는 최소커버리지(MCP; Minimum coverage presence)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고정공통원가에 대하여 독립망 투자비의 상대적비율(독립투자상대비율)을 배부기준으로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MCP는 가입자에게 한단위의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통화량 증감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고정공통원가가 발생하는 음성통화 및 데이터통신의 공동사용구간으로 정의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2G CDMA시스템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선행연구들은 주로 기능적 관점을 이용해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기능적 분석방법은 자산관리의 최소단위가 보드(PAB)이므로 보드단위이상으로 세분화된 시스템별 분석은 실행가능성이 낮다. 예를들어, MSC의 서브시스템인 CCS중에서 LRS(VLR)의 이동성 및 서비스관리를 위한 MAP기능에 해당하는 자산을 분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현실적으로도 세분화된 설비 구성요소별 시장가격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이동망에서의 가입자선로유사설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제 2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를 위한 원가동인 식별

1. 이동망 원가동인

유선망에서 가입자선로 원가 구분이 망구조적 관점에서 설비의 기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원가행태측면에서 통화량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원가를 구분한 것임을 감안하여 이동망의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도 원가동인에 의한 원가행태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동망 원가는 커버리지, 가입자, 통화량의 세 가지 원가동인에 의해 구분가능하다. 커버리지 원가동인에 의한 원가는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가입자 원가동인에 의한 원가는 네트워크의 가입자 수용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말하며 전파사용료 및 HLR이 이에 해당한다. 통화량 원가동인에 의한 원가는 네트워크의 통화량 처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의미하며 커버리지용량원가(Coverage Capacity Cost) 및 순수 통화량 증분에 의한 원가로 구성된다.

<표 4－1> 이동망 원가동인 분류

원가동인(Cost Driver)	내용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지리적 범위
가입자 수	네트워크의 가입자 수용
통화량	네트워크의 호처리

커버리지 원가(coverage cost)는 1통화를 위한 가입자망 투자비로 정의할 수 있다. 1통화를 위한 가입자망은 1FA/1sector의 BTS설비 구축을 기본전제로 하며, 기지국사 취득·임차료(MCP), BTS(중계기 포함), 전파사용료, BSC, 기지국-교환국간 전송로를 포함한다. EU는 커버리지(coverage)를 언제 어디서나 특정 이동통신망에서 통화(a single call)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선택권으로, 용량(capacity)은 증가하는 통화

량을 처리할 수 있는 추가적인 망으로 정의한 바 있다. 커버리지원가는 가입자의 호처리를 위한 가입자망에 대한 원가에 해당하지만 통화량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포함하므로 커버리지 원가가 모두 가입자유사설비 원가는 아니다. 영국 Ofcom은 이동망 커버리지 원가를 MCP(NMS를 포함하는 개념)와 커버리지 용량원가로 구분하였고, 커버리지 용량원가는 통화량이 원가동인인 TS로 구분하였다.

<표 4－2> Ofcom의 커버리지 원가 분류

커버리지 원가 구성항목	원가동인
MCP	커버리지
커버리지용량원가	통화량

이동망의 경우 전파자원의 활용 및 가입자의 이동성이라는 복합적 특성으로 인하여 유선망에서와 같이 가입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원가에 해당하는 가입자선로에 해당하는 설비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이동망에서 가입자망(access network)에 해당하는 커버리지 원가는 어떠한 가입자에게도 직접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커버리지 원가동인으로 분류되는 MCP 및 망관리시스템(NMS)도 트래픽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공통원가에 해당한다. MCP의 경우 통화량이 증가하면 1FA-1sector 기지국에서 섹터분할 또는 FA증설을 통해 기지국 장비를 증설하게 되며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면 Cell분할을 통해 기지국을 추가로 구축하므로 통화량 관련 원가에 해당한다. 또한, NMS도 트래픽이 증가함에 따라 용량증설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동통신망의 가입자선로유사설비는 통화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가입자수에 의해 직접적으로 결정되는 전파사용료, HLR이라고 할 수 있다.

2. 3G망 세부설비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가. 현행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설비 세부분류

현행 회계분리기준 제13조(전기통신설비의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전기통신설비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의 수행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교환기능설비, 전송기능설비, 선로기능설비, 단말기능설비, 정보처리기능설비, 전원기능설비, 전기통신공통설비

또한, 접속원가산정 대상 이동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기능설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할 의무가 있다.

교환기능설비: 이동단국교환설비, 이동중계교환설비,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 데이터교환설비, 교환기능공통설비 전송기능설비: 기지국설비 및 제어장치, 이동중계전송설비, 전송기능공통설비 선로기능설비: 기지국중계선로설비, 이동중계선로설비, 선로기능공통설비

나. 3G망 구성 및 세부설비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전용 설비는 직접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할당하고,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공용설비는 인과관계 및 원가행태를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음성데이터 공용설비는 세분화가 가능한 최소단위로 구분한 후 음성과 데이터의 구분을 추가적으로 수행한다. 음성전용설비인 이동단국교환설비 및 데이터전용설비인 데이터교환설비를 제외한 모든 이동망 설비는 음성데이터 공통설비에 해당한다.

<표 4－3> 3G 설비 세분화 및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기능	세부 분류	세부 설비	설명	음성데이터 구분
교환기능	이동단국 교환설비	MSC Server/ MGW	ATM방식*의 회선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대용량교환기	음성전용
	데이터	SGSN/	ATM방식의 패킷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전용

설비	교환설비	GGSN	대용량교환기. RNC 및 HLR과 연동하여 UE에게 패킷교환호 서비스를 제공	
	가입자 위치 인식장치	HLR	망에 등록된 모든 이동가입자의 파라미터와 위치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DB	음성/데이터 공용
	교환기능 공통설비	SCP 등	지능망(IN)서비스를 제어하는 기능수행. 지능망서비스가입자의 정보를 관리	음성/데이터 공용
전송기능설비	기지국 설비 및 제어장치	Node-B	가입자단말기(UE)와 무선인터페이스를 수행하는 시스템으로 RNC와 정합하여 UE와 core망간의 송수신을 담당	음성/데이터 공용
		RNC	access망의 제어시스템으로 WCDMA 무선가입자 호를 처리. 호흐름제어, 무선접속프로토콜 처리, 무선자원관리, 핸드오프제어, 전력제어 등의 기능수행	음성/데이터 공용
	기지국중계 전송설비	-	기지국-교환국간 전송을 위한 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이동중계 전송설비	-	교환국간 등 core망간 전송	
	전송기능 공통설비	-		
선로기능설비	기지국중계선로설비	-	Node-B와 RNC간의 선로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이동중계 선로설비	-	교환국간 등 core망간의 선로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선로기능 공통설비	-	기지국중계선로설비 및 이동중계선로설비를 위한 선로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주) ATM방식이란 각 메시지마다 주소를 지정한 오버헤드비트를 추가하여 한정된 링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기술을 말함

제 3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원가 배부방안

1. 전기통신설비별 배부기준

가. 교환설비

이동단국교환설비(MSC Server/MGW)는 음성서비스로 직접 할당한다. 데이터교환설비(SGSN/GGSN)는 데이터서비스로 직접 할당한다. 가입자위치인식장치(HLR)는 음성·데이터서비스 가입자수 비율로 배부하고, 가입자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왜냐하면 HLR은 가입자수에 따라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40만 가입자당 HLR 1식).

음성/데이터 가입자 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음성통화료와 데이터 통화료로 부과되는 청구건수를 기준으로 이용가입자를 추출하여 산정 가능하다. 한편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별도로 가입할 경우 가입자수가 합리적이다. 하지만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용자수 적용이 타당하다.

<표 4－4> 이동망 교환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세부분류	세부설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음성·데이터 배부기준
이동단국 교환설비	MSC Server/ MGW	음성전용	-
데이터 교환설비	SGSN/GGSN	데이터전용	-
가입자위치 인식장치	HLR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가입자수 비율. 또는 동일한 비율

나. 전송설비

기지국설비는 효율성을 반영한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기준으로 배부한다.

Node-B는 WCDMA의 기지국으로서 기지국제어기(RNC)의 제어하에 이동단말기(UE)로 호를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WCDMA규격의 무선채널을 통해 UE와 인터페이스하는데 무선채널은 3GPP 규격에 정의되어 있는 WCDMA 방식의 다양한 무선이동통신 서비스(음성서비스 및 고속 데이터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 핸드오프, 전력제어 등)를 제공한다. Node-B는 1X의 BTS와 달리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가 하나의 카드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채널카드단위를 음성/데이터 분리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기지국제어장치는 W-CDMA의 기지국제어장치(RNC) 내에는 RNC(Radio Network Controller)의 전체적인 운영 및 제어와 No.7 신호처리 및 사용자 호처리를 담당하는 RCS, ATM 교환기능 및 하드웨어 경보를 담당하는 AIS, 사용자 트래픽 처리를 담당하는 RAS-T, RNC 및 핵심망과의 정합을 담당하는 RAS-N, Node-B와의 정합을 담당하는 RAS-B가 위치한다. 별도의 공통랙으로 RCSI가 있는데 이 랙은 RNC#0의 서브랙으로 1x GAN처럼 DCN과의 정합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RNC들 간의 통신과 클럭 분배기능을 담당한다. 1x BSM과 같은 운용 및 감시장비로는 URM이 있다.

박준호・강병민(2007)은 BTS(1X)의 음성데이터 원가분리는 설비전체를 음성데이터의 공통설비로 보아 사용량기준으로 배부하되, CEB(channel element block)에 대하여는 채널카드비율로 음성/데이터를 분리한 후에 음성데이터 공통사용채널을 다시 통화량기준으로 배부하도록 제시한 바 있다. 비교하자면 BSC(1X)의 세부 블록중에서 RPP는 데이터전용, TCB는 음성전용, 나머지 블록은 공용설비로 파악이 가능하여 각 서비스 하드웨어의 원가비율을 공통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PSTN과 DCN으로의 정합을 담당하는 인터페이스가 통합이 되고, 기존의 BSC에 위치하던 보코더 블록도 MGW로 옮겨졌기 때문에 RNC에서는 음성과 데이터의 분리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3G의 기지국제어장치, 기지국중계전송설비, 이동중계전송설비는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효율성 미반영) 기준으로 배부한다.

<표 4－5> 이동망 전송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세부분류	세부설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음성·데이터 배부기준
기지국 설비 및 제어장치	기지국설비 (Node-B)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효율성 반영)
	기지국제어장치 (RNC)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기지국중계 전송설비	기지국중계 전송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이동중계 전송설비	이동중계 전송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전파사용료는 음성·데이터서비스 가입자수 비율(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를 별도로 가입할 경우 가입자수가 합리적. 별도로 가입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용자수 적용이 타당). 가입자수 비율 산정이 어려운 경우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가 동일한 비율로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전파사용료는 전파법에 의거 통화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가입자수 원가동인에 의해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별도로 분류하여 가입자수에 의해 배부한다. 전파사용료는 가입자당 분기별 2,000원을 기준으로 감면계수 및 전파특성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전파법>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설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는 무선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무선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대역, 전파의 폭 및 공중선전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시설자가 제10조에 따라 할당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가입자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가입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사업자별 전파사용료 = (가입자수× 단가)× 감면계수 [1- (공용화감면계수 + 로밍감면계수 + 이용효율감면계수)]× 전파특성계수

<표 4－6> 전파사용료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기능	세부기능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음성·데이터 배부기준
전송운영비용	전파사용료	공용	음성/데이터 이용자수 비율. 또는 동일한 비율

다. 선로설비

기지국중계선로설비, 이동중계선로설비는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효율성 미반영) 비율로 배부한다.

<표 4－7> 이동망 선로설비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기준

세부분류	세부설비	음성·데이터 전용·공용 구분	음성·데이터 배부기준
기지국중계 선로설비	기지국중계 선로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이동중계 선로설비	이동중계 선로설비	음성/데이터 공용	음성데이터 환산트래픽

2. 환산트래픽 산정방안

환산트래픽 산정방안으로는 IP망으로의 진화 등으로 고려하여 음성트래픽(서킷)을 IP트래픽(패킷)으로 환산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가. 기지국 제어장치 및 중계전송/선로설비: 단순 속도 환산트래픽

3G의 음성통화 속도는 12.2kbps이므로 음성통화량(초)에 12.2kbps를 곱하여 산출한 음성트래픽과 데이터트래픽의 비율을 배부기준으로 적용한다.

기지국은 최번시 트래픽(음성, 데이터)을 기준으로 용량을 증설하므로 최번시에 발생한 음성/데이터 값이 설계시의 원가동인을 반영하나, 서비스별 원가산정시에는 실제 사용량에 해당하는 실제 발생한 총 트래픽 기준으로 배부기준값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객관적으로 산출가능한 데이터를 적용하여 객관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기지국 제어장치 및 중계전송/선로설비의 경우 단순 속도로 환산한 음성트래픽과

데이터트래픽이 자원의 소비를 적절히 반영한다. 속도와 점유시간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이동통신망의 서비스별 트래픽 처리에 대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송/선로설비의 배부기준으로 적용하는 E1급 환산회선수는 단순 속도로 환산한 트래픽량과 유사한 개념이다. 다시말하면 단순 속도 환산트래픽이 현행 배부기준으로 사용되는 E1급 환산회선수를 반영할 수 있는 배부기준이 된다.

나. 기지국설비: 효율성 반영 환산트래픽

Throughput 기준에 의하면 데이터 효율성은 음성의 2.78배의 결과가 도출된다. 음성전용 및 데이터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지국별 최대용량을 산출하여 그 비율을 효율성으로 정의한다. 1개 셀(1FA-1sector)에서 단위시간당 송수신이 가능한 데이터 트래픽 양을 Throughput(TP)이라고 하며, HSDPA에서 QoS를 보장하는 TP을 2.75Mbps[7]이라고 가정하면 음성·데이터트래픽의 효율성 산정이 가정하다.

<표 4－8> 음성서비스 제공시 WCDMA 기지국 용량

파라미터	CDMA2000-1X	WCDMA
처리이득	128	315
전송대역폭(MHz)	1.2288	3.84
비트속도(Kbps)	9.6	12.2
음성활성화계수	0.50	0.5
주파수 재사용률	0.65	0.65
다중셀 부하계수	0.67	0.67
섹터화이득	1	1
비트에너지당 잡음전력비	4.3	5.0
Pole 용량	62	129
셀로딩	0.75	0.75
동시 사용자수	46	97
얼랑용량(Erl)	36.45	85.05

7) 3GPP TR 25.848 V4.0.0(2001-03) P19

WCDMA 1개 셀(1FA-1sector)의 음성 용량은 85.05얼랑(445MB)이다. 1얼랑을 시간당 패킷으로 단순 환산하면 5.4MB(12200bps*60초*60분/8/1,024/1,024)이므로 85.05얼랑은 445MB이 된다. 데이터 Throughput: 2.75Mbps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1,238MB (2.75Mbps*60초*60분/8)이 된다. 따라서 음성:데이터 = 445MB: 1,238MB = 1:2.78이 산출된다.

다. 효율성 산정을 위한 대안

(1) PWR기준: 데이터 효율성 3.06배 가정

써킷(CS)과 패킷(PS)호의 특성차이로 인해 이들의 혼용 무선망인 WCDMA의 용량을 점유시간이나 packet량이 아닌 Downlink PWR로 계산하는 방식이다. 무선 환경 및 혼용비율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른 모든 환경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WCDMA의 기지국 파워기준으로 데이터트래픽은 음성트래픽에 비해 3.06배의 효율성을 가진다.

<표 4－9> 기지국 파워기준 음성·데이터 트래픽 효율 비교

구분	음성	영상(CS64K)	HSDPA
Data Rate(Kbps)	12.2	64.0	7,200
단독 Bearer별 TP용량(Kbps)	1,342 (110명*12.2)	1,984 (31명*64)	4,100
단위 Kbit당 PWR (W)	0.0110 (14.8/1,342)	0.0075 (14.8/1,984)	0.0036 (14.8/4,100)
효율(음성 기준)	1	1.47	3.06

(2) Ofcom 방식

Ofcom은 데이터효율성을 3배로 가정하였다. 데이터트래픽을 음성기준인 Erlang[8]으로 전환한 결과 1MB = 2.98 voice minutes이 된다.

Ofcom의 GPRS 환산계수
・총데이터량 중 다운링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80%로 가정
1MB = 0.8MB = 0.8*1024*8kbits = 6,533.6kb = 8.95분
・상대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음성과 데이터에 3:1의 가중치 부여
1MB = 8.95/3 Voice minutes = 2.98 voice minutes

(3) 운용현실을 가정한 TP 기준: 데이터 효율성 1.78배

QoS를 보장하는 TP을 1.76Mbps이라고 가정하면 음성·데이터트래픽의 효율 산정이 가능하다. WCDMA 1개 셀(1FA-1sector)의 음성 용량은 85.05얼랑(445MB)이다. 데이터 Throughput: 1.76Mbps를 시간단위로 환산하면 792MB(1.76Mbps*60초*60분/8)이므로 음성:데이터 비율은 445MB: 792MB 즉, 1:1.78이다.

8) Erlang용량은 CDMA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만족시키면서 수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통화용량을 의미 ex) 1Erlang=1시간에 60통화가 발생하였고 1통화당 평균 1분씩 사용

제 4 절 마케팅 원가 및 지원성격 원가 배부

1. 현행 배부기준의 적용가능성

가. 자산/감가상각비

일반지원자산의 세부기능별 배부기준 중에서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비율”은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로 분류가능하나, “역무별 면적비율,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비율, 인원수비율”은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로 분류하여 집계하기가 어렵다.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은 수익의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분리를 전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표 4－10> 지원성격 자산/감가상각비의 역무별 배부기준

구분	현행 배부기준	적용가능성
일반지원자산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	
	가.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불가(단서조항, 가능)
	나.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비율	불가
	2.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비율	불가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 기능의 인원수 비율	불가
	4.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	불가
	5. 기업이미지광고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가능

나. 운영비용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은 “역무별 면적비율,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은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로 집계가 어렵다. 판매영업비용, 기업이미지광고비용, 대손상각비, 접속료등의 배부기준인 “역무별 요금수익,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은 수익의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분리를 전제로 적용이 가능하다.

일반관리 배부기준인 “인원수”는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로 분류하여 집계하기 어렵다. 또한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는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적용이 가능하다.

<표 4－11>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외의 운영비용 역무별 배부

구분	배부기준	적용가능성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	1.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운영비: 역무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불가
판매영업기능	1. 광고선전비: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2. 광고선전비외의 판매촉진비: 역무별 신규가입자 요금수익 3. 통신단말장치의 구입 지원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금액 비율	가능
고객서비스기능	1. 가입자관리비용: 역무별 가입자수 비율. 단, 콜센터의 비용은 상담건수 2. 마일리지, 멤버쉽 관리비용: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청구・수납비용: 역무별 청구건수 비율	가능 가능 가능
일반관리기능	역무별 인원수 비율	불가
기업이미지 광고기능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가능
설비사용료	기능별 운영비용의 역무별 배부기준 준용	-
대손상각비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가능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기집계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	가능
접속료	역무별 직접할당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매출액(접속료수익 제외)비율	가능

다. 종합검토

검토결과 역무별 면적비율, 인원수 비율의 음성서비스 및 데이터서비스로의 분류 및 집계가 어렵다.

2. 지원성격 원가의 음성 · 데이터서비스 분리방안

일반지원자산 역무별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 적용항목은 역무별 면적비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장부가액(취득가액) 비율로 적용한다.

<표 4－12> 일반지원자산(운영비용)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안)

구분	현행	개선안
일반지원자산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 가.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장부가액비율	1. 전기통신설비 지원기능자산 가.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역무별 전기통신설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나. 이외의 일반지원자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장부가액 비율
일반지원자산 운영비용	1.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운영비: 역무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일반지원자산의 역무별 취득가액비율	1. 토지, 건물 등 구축물 운영비: 역무별 면적비율(다만, 역무별 면적비율이 어려운 경우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2. 이외의 일반지원자산운영비: 전기통신설비의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

인원수 비율 적용 항목에서 인원수 비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을 적용한다. 단, 일반관리지원기능자산(일반관리기능비용)은 인원수 비율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취득가액 비율을 적용한다.

<표 4－13> 일반관리기능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안)

구분	현행	개선안
일반 지원 자산	2.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 기능의 인원수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	2. 판매영업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판매영업기능의 인원수비율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3. 고객서비스지원기능자산: 역무별 고객서비스 기능의 인원수 비율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요금수익 비율 4. 일반관리 지원기능자산: 역무별 인원수 비율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 취득가액 비율
일반 관리 기능 (비용)	역무별 인원수 비율	역무별 인원수 비율이 어려운 경우 역무별 전기통신설비와 일반지원자산 취득가액 비율

제 5 절 음성·데이터서비스 수익 배부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회계분리기준 제1조).

이러한 "회계분리"는 전기통신사업자가 개별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된 자산, 비용 및 수익을 형태별, 기능별 분류를 거쳐 해당 역무별로 할당. 배부하는 것을 의미하며 (회계분리기준 제2조 1항), 특히 형태별 분류함은 자산 등을 유무형자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발생형태별 계정으로 세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회계분리기준 제 2조 2항).

일반적으로 통신사업자는 재무회계에서 사용되는 계정과목을 규제보고 목적에 적합하게 영업보고서상 형태별 분류로 재분류하여 영업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특히, 회계분리기준 제2장에서는 유형자산(무형자산 포함)에 대한 형태별 분류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취득원가 산정방법 (제7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년수(제8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 분류의 세분화는 통상적으로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와 관련된 자산가액 및 감가상각비가 영업비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방법 및 기간을 표준화하여 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영업보고서의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일차적으로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 역무손실보전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요한 요금수익의 경우 보다 세부적으로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하고 있다.

<표 4－14> 영업수익의 형태별 분류

구 분		정 의
영업수익	요금수익	가입비수익, 기본료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수익, 장치비, 부가서비스수익, 기타요금수익으로 구분
	접속료수익	다른 사업자에게 전기통신망을 제공시 받는 대가로서 주로 착신통화에서 발생하며, 시외 및 국제전화사업자 등에게 접속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발신통화에서도 발생
	국제정산수익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수익. 영업비용의 국제정산부담금의 반대 개념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보편적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타 사업자로부터 받는 손실보전금이며, 시내전화, 공중시내전화, 도서통신, 선박무선전화에서 발생
	내부거래수익	-
	자가소비사업용수익	-
	기타 영업수익	전기통신사업과 관련있는 과금대행수수료 등 위에서 정의되지 않는 기타 수익

<표 4－15> 요금수익의 형태별 분류

구 분		정 의
요금수익	가입비수익	가입자의 시스템 등록 등 가입 신청절차를 처리함에 따라 수수하는 수익
	기본료수익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을 위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자가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요금수익
	정액요금수익	특정서비스 이용을 위한 요금으로 정해진 요금 외의 추가적으로 부과되지 않는 요금 납부에 따른 수익
	통화료수익	전화통화시 사용량에 따라 그 대가로 납입하는 요금수익
	장치비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장치를 설치함에 따른 수익
	부가서비스수익	부가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를 납입함에 따른 수익
	기타 요금수익	기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수익

이러한 수익구분 체계는 기존의 음성통화 중심의 과금체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현재와 같은 음성-데이터 융합과 스마트폰 등장과 같은 통신시장의 환경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존의 이동전화 요금체계 중심으로 설정되었던 기본료와 통화료로 이원화되었던 과금구조가, 음성, 데이터, SMS가 통합된 정액제 요금으로 이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요구를 통신사업자가 받아들여 음성, 데이터, SMS의 비중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형 요금제도가 등장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제도에 따라 이동전화 음성 및 데이터를 도매로 판매하는 새로운 도매시장이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영업보고서상 정액제 요금수익을 음성, 데이터, SMS로 합리적으로 배부하는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수익배부 기준 및 세분화된 수익정보가 회계분리 영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수익의 음성·데이터서비스 기본 분리대안

기본적으로 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로 분리하기 위한 대안은 다음과 같다.

가. 가입비 수익

(1) 대안1: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기본료수익, 통화료수익, 정액요금수익 비율로 배부

가입비 수익, 기본료 수익, 통화료 수익, 정액요금수익은 모두 회사의 요금전략에 의해 결정되는 항목이고, 가입을 통해 기본료수익, 통화료수익, 정액요금수익이 발생되므로 해당 수익비율로 배부한다.

(2) 대안2: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에 1:1로 배부

가입비는 고객이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고객이 가입비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의 착발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

다. 따라서 가입비를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에 1:1의 비율로 배부한다.

나. 기본료 수익

(1) 대안1: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통화료 수익비율로 배부

통신사업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회수한다. 기본료와 통화료의 결정은 고정비 및 변동비라는 원가행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요금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료는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의 수익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입자별 음성서비스 수익과 데이터서비스 수익을 구분하여 그 비율대로 기본료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회사전체의 기본료를 음성서비스 수익과 데이터서비스수익의 상대적 비율로 배부하는 것이 그 대안이다.

(2) 대안2: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에 1:1로 배부

기본료는 고객이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고객이 기본료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의 착발신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료를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에 1:1의 비율로 배부한다.

다. 정액요금수익

정액요금수익은 음성과 데이터서비스를 각각 개별적으로 이용할 때의 공정가치 비율에 의해 배부한다.

3. 발생가능한 요금제 유형

좀더 명확한 수익분리를 위해 발생가능한 요금제 유형을 고려한 배부기준의 정립

이 필요하다. 종량제 및 정액제 형태를 감안한 발생가능한 요금제 유형은 총 24개이다. 주요 요금제 유형별로 기본료, 통화료, 정액요금, 초과요금 등의 발생 형태를 감안하여 수익배부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4－16> 발생가능한 요금제 유형

요금제 유형	종량제			정액제				
	기본료	통화료 (종량)		정액요금		추가 정액	초과요금 (종량)	
		음성	데이터	음성	데이터	데이터	음성	데이터
기본료1	○							
기본료2	○	○						
기본료3	○	○	○					
기본료4	○	○			○			
기본료5	○	○			○			○
기본료6	○		○					
기본료7	○				○			
기본료8	○				○			○
음성정액제1				○				
음성정액제2				○			○	
음성정액제3				○				○
음성정액제4				○			○	○
음성정액제5				○	○			
음성정액제6				○	○		○	
음성정액제7				○	○			○
음성정액제8				○	○		○	○
표준정액제1				○				
표준정액제2				○			○	
표준정액제3				○				○
표준정액제4				○			○	○
표준정액제5				○		○		
표준정액제6				○		○	○	
표준정액제7				○		○		○
표준정액제8				○		○	○	○

* 음성정액제는 음성통화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정액제를 의미하며, 표준정액제는 음성·데이터·SMS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정액제를 말함

4. 요금제 유형별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 방안

가. 기본료 형태

(1) 기본료 1(기본료수익만 발생)

대안1은 기본료 수익을 음성서비스에 할당하는 방법이다. 발신에 의한 통화료 발생이 없이 착신서비스만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기본료는 음성서비스에 할당한다.

대안2는 기본료 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에 동일한 비율로 배부하는 방법이다. 착신서비스만 이루어지는 형태일지라도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료는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에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기본료는 고객이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며, 고객이 기본료를 지불하면 사업자는 이동망을 통해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2) 기본료 2(기본료, 음성통화료 발생)

대안1은 기본료 수익을 음성서비스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존재해온 기본료수익은 데이터통화료와는 관계없는 수익에 해당한다. 더구나 통화료 발생이 음성서비스만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기본료는 음성서비스에 할당한다.

대안2는 기본료 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에 동일한 비율로 배부하는 방식이다.

(3) 기본료 3(기본료,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통화료 발생)

대안1은 기본료 수익을 음성서비스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데이터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존재해온 기본료수익은 데이터통화료와는 관계없는 수익에 해당한다. 통화료 발생이 없이 음성서비스만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기본료는 음성서비스에 할당한다.

대안2는 기본료 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에 동일한 비율로 배부하는 방식이다. 착신서비스만 이루어지는 형태일지라도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본료는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에 동일한 비율로 배부한다.

대안3은 기본료 수익을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통화료수익 비율로 배부하는 방식이다. 통신사업자는 기본료와 통화료로 음성과 데이터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를 회수한다. 기본료와 통화료의 결정은 고정비 및 변동비라는 원가행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의 요금전략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기본료는 음성통화료와 데이터통화료의 수익비율에 따라 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기본료 4(기본료,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정액요금 수익 발생)

대안1과 대안2는 앞의 대안과 동일하다. 대안3은 기본료 수익을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정액요금수익 비율로 배부한다. 대안4는 데이터정액요금수익은 별도의 선택형 요금제에 해당하므로 기본료와는 관계없는 형태로 보아 대안1과 동일하게 모든 요금수익을 음성서비스에 할당한다.

(5) 기본료 5(기본료,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정액요금, 데이터초과요금 수익 발생)

대안1과 대안2, 대안3은 앞의 대안과 동일하다. 다만 데이터 초과요금 수익은 추가증분원가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므로 기본료와는 관계없는 수익에 해당한다.

(6) 기본료 6(기본료, 데이터통화료 수익 발생)

대안1과 대안2는 앞의 대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안3은 기본료 수익을 데이터서비스에 할당한다. 오직 데이터 통화에 의해 발생한 수익은 데이터서비스에 할당한다.

(7) 기본료 7(기본료, 데이터정액요금 수익 발생)

대안1과 대안2, 대안3은 앞의 대안과 동일하다.

(8) 기본료 8(기본료, 데이터정액요금, 데이터 초과요금 수익 발생)

대안1과 대안2, 대안3은 앞의 대안과 동일하다.

나. 요금제 유형별 음성/데이터 수익 분리 대안

정액제 유형도 기본료 유형과 동일한 절차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은 음성데이터 수익분리의 대안이 도출된다.

(1) 기본료 형태

I-① 기본료 수익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

i) 기본료수익은 데이터서비스 제공이전부터 존재한 항목이므로 음성서비스에 할당

ii) 기본료수익을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수익으로 동일 비율로 배부

iii) 기본료수익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비율로 배부

I-② 데이터정액제와 결합한 기본료수익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

i) 기본료수익은 데이터서비스 제공이전부터 존재한 항목이므로 음성서비스에 할당

ii) 기본료수익을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수익으로 동일 비율로 배부

iii) 기본료수익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비율로 배부, 데이터정액제는 제외(기본료와 상관없는 항목)

iv) 기본료수익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비율로 배부, 데이터정액제는 데이터통화료 수익에 포함

I-③ 데이터정액제 한도 초과 데이터통화료 존재시 기본료수익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분리

i) 기본료수익은 데이터서비스 제공이전부터 존재한 항목이므로 음성서비스에 할당

ii) 기본료수익을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수익으로 동일 비율로 배부

iii) 기본료수익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비율로 배부, 데이터정액제(초과 데이터통화료 포함)는 제외(기본료와 상관없는 항목)

iv) 기본료수익을 제공하는 음성 및 데이터통화료 비율로 배부, 데이터정액제(초과 데이터통화료 포함)는 데이터통화료 수익에 포함

(2) 정액제 형태

정액제 형태의 수익은 정액요금 수익을 기본료 수익과 통화료 수익으로 구분할 것인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결정되면 통화료 수익은 사용량에 따른 수익으로 구분할 것인가, 제공량에 따른 수익으로 구분할 것인가의 결정이 따라야 한다.

다. 종합의견

수익의 음성데이터 분리는 사업자의 과금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음성데이터 분리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장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방안 연구

제 1 절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재정의

1. 현황 및 문제점

영업보고서상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다. 모든 통신사업자는 자사의 재무회계 계정과목에 관계없이 아래의 형태별 분류체계에 따라서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전기통신사업회계의 경우 사업자별 비교가능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1. 인건비 : 급여, 잡급, 퇴직급여,
2. 경비
   가. 복리후생비
   나. 여비교통비
   다. 통신비
   라. 전력수도료 등
   마. 전파사용료
   바. 제세공과금등
   사. 소모품비
   아. 지급임차료
   자. 수선유지비
   차. 차량비
   카. 보험료
   타. 지급수수료
   파. 교육훈련비
   하. 접대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 다른 사업자의 설비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설비사용료 및 전용회선료 등

4.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 무형자산의 상각액

6. 대손상각비

7. 경상연구비 및 연구비 : 연구부문에서 발생된 비용 중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 중 외국정보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부담금

9. 접속료 : 다른 사업자의 전기통신망을 사용하는 대가로서 지불하는 비용 중 접속설비비, 접속통화료, 접속통신료, 부대서비스비

10. 내부거래비용 : 동일한 사업자내 특정 역무 및 서비스가 다른 역무 및 서비스를 구성 또는 지원하는 경우 이용역무 및 서비스가 제공 역무 및 서비스에게 이용대가로서 지급되어야 하는 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자가 자체 생산한 서비스를 업무와 관련하여 소비하는 경우 해당비용

위와 같은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체계 중에서 재무회계와 달리 10. 내부거래비용을 별도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2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한 통신사업자가 다양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특정 역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하나의 전기통신서비스의 비용효율성이나 경쟁력이 부당하게 다른 전기통신서비스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동일기업에서 제공한다 하더라도 역무(서비스)가 다른 경우 마치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제공하여 역무(서비스)간 원가의 상호보조(cross-subsidy)를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1. 자가소비사

업용 비용은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생산 또는 영업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통신역무(서비스)의 원가를 구분하여 사용주체(고객 또는 사업자)에 따라서 원가를 집계하여,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원가가 타역무(서비스) 원가에 녹아드는(spread out)되는 구조를 방지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통신사업자들은 K-IFRS 도입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제도상 개선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재무회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계정과목에 대한 분류를 재검토하여 형태별 계정과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XBRL 표준계정과목체계

영업보고서의 형태별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2011년부터 상장법인 등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IFRS)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장법인은 IFRS 기반으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XBRL[9]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IFRS에서는 다양한 재무제표 표시방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준계정과목체계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간, 연도별, 국가별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IASB에서는 표준계정과목체계(Taxonomy[10])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텍사노미에서는 최소한의 계정과목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상장법인이 재무제표를 작성 시 추가적으로 많은 계정과목을 신설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용 표준계정과목체계”를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 표준계정과목체계는 상장법인이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분반기 포함)상의 연결 및 개별 재무제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에 적용되며, 적용시기는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하는

9) 재무정보의 작성·유통·분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99년 비영리 국제 컨소시엄인 ’XBRL International’이 제정한 기업 재무보고용 국제표준 전산언어로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의 약자

10) XBRL의 구성요소인 표준계정과목체계, 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의 명칭, 계산식, 표시순서, 계정과목 간 관계, 회계기준 근거조항 등을 체계적으로 집계한 정보

12월 결산법인이 2011년 5월 16일까지 제출하는 1/4분기 보고서부터 적용하여야 한다.

XBRL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5가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 원칙 1 :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IFRS 기준 공시용 표준계정과목'에 있는 계정과목 및 주석만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정과목 중 필요한 계정의 선택, 불필요한 계정의 삭제, 표준계정과목에 없는 계정의 신설 등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한 재무제표 작성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많이 사용하는 계정과목을 표준계정과목에 미리 반영하여 제출인이 쉽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ii) 원칙 2 : 표준 계정과목을 다른 용도의 계정과목으로 변경하여 사용을 금지한다.

예를 들어,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계정과목을 성격이 다른 '유형자산'으로 단순히 명칭만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동 XBRL 재무제표가 유통되었을 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며, 제시된 표준 계정과목이 회사의 실질을 제대로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신설하여 사용한다.

iii) 원칙 3 : IASB 택사노미의 번역에 따라 계정과목명이 상당히 길거나, 계정의 성격은 동일하지만 지금까지 회사가 사용하던 명칭과 다른 경우에는 계정과목을 신설해서는 안 되고 계정과목명(한글 레이블)만 바꾸어 사용한다. 예를 들어, '매각예정 또는 소유주에 대한 분배예정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이나 처분자산집단' =>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등 회사의 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계정과목명으로 변경하여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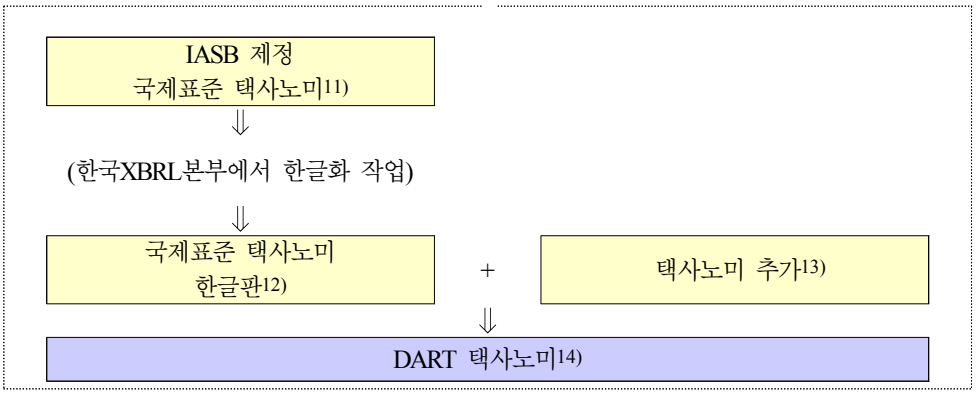
iv) 원칙 4: 제공하는 DART 택사노미는 제출인이 선택하여 편리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많은 계정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사용하지 않는 계정과목은 반드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미사용 계정과목을 삭제하지 않는 경우 그대로 공시되어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v) 원칙 5: 주석의 경우에도 계정과목과 동일한 작성원칙 적용

DART에서 제공하는 주석양식에 맞추어 작성하되(대부분 표형태이며, 표의 빈칸을 채우는 방식)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 부족한 항목은 추가, 순서 변경 등 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석을 작성한다. 각각의 주석에는 표준주석으로 기재하는 내용 이외에 회사가 원하는 관련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빈칸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IASB에서 제공하는 국제표준 텍사노미는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을 기준으로 계정과목을 제시하고 있어 크게 연결재무제표(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텍사노미와 개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텍사노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림 5－1] 공시용 표준계정과목체계 구성방법



3.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상 형태별 분류체

11) 국제표준택사노미 원본은 http://www.iasb.org 참조

12) 국제표준택사노미 v.2009에 대한 한글 번역본은 한국 XBRL 본부에서 한글화작업을 통하여 IASB의 승인을 받았으며, http://www.xbrl.or.kr, http://www.iasb.org 참조

13) IFRS 조기적용 기업들의 계정과목 사용빈도와 다수의 상장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K-GAAP 계정과목 등을 고려하여 추가

14) 국제표준 택사노미에 계정과목을 추가하여 DART에서 공시용으로 제공하는 표준계정과목체계를 편의상 'DART 택사노미'라 함

계가 어떻게 변화해야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IASB에서 제시한 IFRS기반 공시용 계정과목체계의 텍사노미를 검토한 결과 기존 K-GAAP에 따라 통신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여 온 것과 계정과목에 차이(gap)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K-GAAP이 기준서 형태로 개정되는 경우 그 이전에 IASB에서 제안한 IFRS의 내용을 검토하여 80%이상 K-GAAP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IFRS도입에 따라 급격한 계정과목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계정과목명은 기존의 K-GAAP에 따라 통신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여 온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IFRS 도입에 따라서 별도로 영업보고서의 형태별 회계분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 보다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별 분류체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와의 조정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K-GAAP상 계정과목을 IFRS의 텍사노미상의 표준화된 계정과목명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를 들어, 전파사용료, 설비사용료 등 통신사업에 적합한 비용항목은 현행 형태별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력수도료, 제세공과금 등,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차량비, 무형자산상각액의 명칭만 표준계정과목으로 수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텍사노미는 IFRS의 기준재무제표인 연결재무제표가 아니라 별도재무제표(separate financial statement)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항목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표 5－1> IFRS기반 공시용 계정과목체계_계정과목

Salaries wages	급여
Provision for severance indemnities	퇴직급여
Employee benefits	복리후생비
Insurance premiums	보험료
Depreciation expense	감가상각비
Amortisation expense	무형자산상각비
Bad debt expenses	대손상각비
Commissions	지급수수료
Advertising expenses	광고선전비
Training Expenses	교육훈련비
Vehicle maintenance expenses	차량유지비
Publication expenses	도서인쇄비
Entertainment expenses	접대비
Rental expenses	임차료
Communication expenses	통신비
Freight expenses	운반비
Taxes dues	세금과공과
Supply expenses	소모품비
Utility expenses	수도광열비
Repair expenses	수선비
Ordinary development expense	경상개발비
Travel expenses	여비교통비
Distribution costs	물류원가

출처 :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사이트(Income statement, by function of expense -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상 “Selling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표 5－2> 영업비용 형태별 분류(계정과목) 개선방안

XBRL 표준계정과목중 영업비용 항목*	회계분리기준 제9조 제3항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개선안
급여	1. 인건비:급여, 잡급, 퇴직급여	
퇴직급여		
	2. 경비	
복리후생비	가.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나. 여비교통비	
통신비	다. 통신비	
수도광열비	라. 전력수도료등	수도광열비
	마. 전파사용료	
세금과공과	바. 제세공과금등	세금과공과
소모품비	사. 소모품비	
임차료	아. 지급임차료	임차료
수선비	자. 수선유지비	수선비
차량유지비	차. 차량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카. 보험료	
지급수수료	타.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파. 교육훈련비	
접대비	하. 접대비	
광고선전비	거. 광고선전비	
	너. 판매비	
	더. 잡비	
	3. 설비사용료	
감가상각비	4.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5. 무형자산상각액	무형자산상각비
대손상각비	6. 대손상각비	
경상개발비	7. 경상개발비 및 연구비	
	8. 국제정산부담금	
	9. 접속료	
	10. 내부거래비용	
	11. 자가소비사업용 비용	
운반비		
도서인쇄비		
물류원가		

주) 별개의 손익계산서/개별/기능별 분류 기준

제 2 절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 분류체계 개선방안

1. K-IFRS 도입에 따른 통신사업자 회계처리 변화

가. KT

(1) KT의 K-IFRS 적용사항 (2011년 5월 30일)

KT는 2011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7년 3월 IFRS 도입 로드맵의 발표이후 도입 추진팀을 구성 관계자에 대한 사내·외부 교육을 실시하여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분석하였으며, 외부자문사를 선정하여 주요 차이항목에 대한 분석 및 K-IFRS의 선택가능대안이 회사의 재무정보에 미치는 영향의 분석 및 회계정책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회사의 2011년 12월 31에 종료하는 연차재무제표는 K-IFRS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연차재무제표가 될 것이다. 연결회사의 K-IFRS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K-IFRS 채택일은 2011년 1월 1일이다. 연결회사의 중간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K-IFRS의 완전한 소급적용이 아닌 관련 의무적 예외 항목과 특정 선택적 면제조항을 적용하였다.

(2) KT의 기존 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2011년 5월 30일)

KT의 기존 회계정책과 IFRS를 적용한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점은 아래 내용과 같다.

<표 5－3> K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구분		K-IFRS	기존회계기준
K-IFRS	사업결합	2010.1.1(전환일)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거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

최초 채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 1103호(사업결합)의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2010.1.1(전환일)에 일부 유형자산에 대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이를 간주원가로 인식	해당사항 없음
	종속기업, 공동기업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	별도 재무제표 하에서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은 2010.1.1(전환일)현행회계기준상의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적용	해당사항 없음
	차입원가 자본화	2010.1.1(전환일)이후 취득하는 적격자산에 대한 차입원가만 자본화	해당사항 없음
수익인식 기준의 변경		가입비를 이동전화 서비스매출의 일부로 보아 가입고객의 예상서비스를 가입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	PCS서비스 가입시 수령하는 가입비에 대해 발생 시점에 전액 수익인식
부동산판매계약의 회계처리 변경		부동산판매계약을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인식조건에 따라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인식	부동산판매계약을 건설계약으로 보고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인식
고객충성제도		보상점수를 부여한 매출거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나누고 이연하여 수익인식	매출한 시점에 미래에 지출될 비용을 판매비와 부채서응당금으로 계상
별도재무제표 하에서의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대하여 지분법을 적용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외감법상지배종속 관계를 판담함에 따라 종속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	외감법에 따라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하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항 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제외
차입원가의 자본화		2010.1.1(전환일)이후 적격자산의	차입원가는 모두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	비용으로 인식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대여금 및 수취채권으로 분류된 금융자산은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명목가액과의 차액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며,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측정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에 대해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차이가 중요한 경우 현재가치에의한 평가를 수행
종업원급여	확정급여제도와 확정기여제도를 모두 운용하고 있으며, 확정급여 제도를 선택한 임원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하여 확정급여채무를 측정하고, 기타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하여 보험수리적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미지급비용을 계상	보고기간 말 현재 1년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며, 기타 장기종업원급여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비용처리
영업권	영업권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매 보고기간 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염가매수차익은 사업결합일에 당기손익으로 인식	사업결합 시 인식된 영업권은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염가매수차익은 정액법으로 환입
투자부동산 계정재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임대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분류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동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취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액을 충당부채로 계상
회원권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기타비유동자산의 장기성보증금으로 분류

이연법인세	종속회사,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으로 구분하여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	종속회사, 공동지배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일시적 차이를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로 보아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비유동으로 표시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표시

나. SKT

(1) SKT의 K-IFRS 작용사항(2011년 5월 30일)

SKT는 2007년 3월 발표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관한 로드맵에 따라 2011년 회계년도부터 K-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SKT는 2008년 4월 도입 추진팀을 구성하고 외부자문사를 선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을 준비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단계로 진행이 되었다. 첫째, 도입 영향분석 및 계획으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보고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사전분석을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이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보고 및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상세분석 및 대안을 수립함과 동 영향에 대한 사내외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파악된 변경사항들을 업무프로세스 및 시스템에 구현하여, 이를 통해 SKT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신뢰성 있는 재무

정보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2) SKT의 K-IFRS의 적용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2011년 5월 30일)

SKT의 기존 회계정책과 IFRS를 적용한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점은 아래 내용과 같다.

<표 5－4> SK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구분		K-IFRS	기존회계기준
K-IFRS 최초 채택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함.	해당사항 없음
	간주원가로서의 공정가치나 재평가액	연결회사가 소유한 일부 유형자산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11.1.1) 현쟁의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간주원가로 사용함	해당사항 없음
	차입원가 자본화	2차입원가의 자본화와 관련하여 자본화개시일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 이후인 적격자산과 관련된 차입원에 대하여 적용	해당사항 없음
가입비수익 이연		가입비 수익을 미래 제공될 서비스에 대한 이연수익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수익으로 인식	가입시점에 일시적 수익으로 인식함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외감법상지배종속 관계를 판담함에 따라 종속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	외감법에 따라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하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항 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제외
금융자산 양도		금융기관에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을	연결회사는 매출채권등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경우

	제거하지 않고 금융부채로 인식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매각거래로 인식
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퇴직급여 채무로 계상함 또한 연결회사의 장기종업원급여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해 보험수리적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함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금충당부채로 계상
영업권	영업권을 상각 또는 환입하지 않으며, 영업권에 대해서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함	연결회사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영업권릉 최초 발생연도부터 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
투자부동산 계정재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계정재분류함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기계장치 등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기계장치 등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사용
회원권	시설이용권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는 비유동 항목으로 표시 하여야함	연결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 및 이연법인세부채를 관련된 항목의 재무상태표상의 분류에 따라 유동·비유동으로 구분하며, 재무상태표상 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

		소멸시기에 따라 유동·비유동항목으로 구분표시함
	일시적차이의 소멸방법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가액과 세무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해 하나의 일시적차이로 보아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이연법인세 부채의 인식여부를 판단

다. LG U-plus

(1) LG U+의 K-IFRS 작용사항(2010년 5월 30일)

LGU+는 2010년 1월 1일 개시하는 회계년도부터 K-IFRS를 조기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09년 1월 1일이다. K-IFRS 조기 도입을 위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으며, 해당 조직은 K-IFRS 조기도입에 따른 영향 분석 및 해당 결과를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다. 2007년부터 외부자문사를 선정하여 1단계로 주요 차이 항목에 대한 분석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로 차이항목에 대한 대안을 수립한 후 회사의 회계정책을 결정하였으며, 3단계로 전환일 및 그 이후 재무제표에 대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2) LGU+의 K-IFRS의 적용 회계정책과의 주요 차이점(2010년 5월 30일)

LGT의 기존 회계정책과 IFRS를 적용한 회계정책의 중요한 차이점은 아래 내용과 같다.

<표 5－5> LGT 기존회계정책과 K-IFRS의 주요 차이점

구분		K-IFRS	기존회계기준
K-IFRS 최초 채택	사업결합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09.1.1) 이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작성하지 아니함.	해당사항 없음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 종속기업 및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2009.1.1)의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을 간주원가로 사용하였다	해당사항 없음
	유형자산의 원가에 포함된 사후처리 충당부채의 변경	임차 토지 및 건축물site와 관련 복구충당부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 해석서를 소급적용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수익인식 기준의 변경		가입비를 PCS서비스매출의 일부로 보아 가입고객의 예상 서비스 가입기간 동안 이연하여 수익인식	PCS서비스 가입시 수령하는 가입비에 대해 발생 시점에 전액 수익인식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범위변동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외감법상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함에 따라 종속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가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모든 종속기업을 포함	외감법에 따라 지배종속 관계를 판단하되 외감법 시행령 제1조의3항 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00억에 미달하는 주식회사는 제외
수취채권의 손상과 대손		유의적인 수취채권의 경우 개별적으로 손상발생여부를 검토하고, 그 이외의 수취채권은 유사한 신용위험 특성별로 그룹화 하여 집합적인 손상검토 수행 후 발생될 손실을 대손충당금의로 설정	금융자산 중 수취채권에 대한 평가시 미래의 예상손실을 추정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종업원급여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인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추정한 금액을 확정급여 채무로 계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 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 전액을 퇴직금충당부채로 계상
금융상품에 대한 상각후원가로의 측정	관련 현금흐름이 장기에 걸쳐 발생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 원가로 평가	관련 현금흐름이 장기에 걸쳐 발생되는 일부 대여금 및 수취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대해서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
금융자산의 제거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의 수취채권양도 거래는 금융자산의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당하여 차입거래로 인식	수취채권을 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매각거래로 인식
금융상품에 대한 현재가치 평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측정하고 최초인식후에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현금흐름이 장기간에 걸쳐 발생되는 일부 대여금 및 수취채권등의 금융상품에 대하여 명목금액으로 회계처리
투자부동산 계정재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을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함
유형자산 상각방법 변경	기계장치 등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	기계장치 등 일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사용
고객충성제도	가입고객의 PCS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를 보상점수(마일리지)와 매출의 나머지에 배분하고 마일리지 회수 시 보상점수에 배분한 대가를 수익으로 인식	가입고객의 PCS서비스 이용시 부여되는 보상점수(마일리지)에 대해 미래의무이행에 필요한 금액을 추정하여 충당부채와 비용 인식
회원권 등에 대한 계정재분류	회원권 및 기타 시설이용권을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으로 계정재분류	회원권 및 기타 시설이용권에 대해 기타비유동자산으로 회계처리
이연법인세	유동항목으로 분류된 이영법인세를 비유동항목으로 계정재분류 항목별 전환조정사항으로 발생하는 법인세 효과 반영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에 대해서 유동항목과 비유동항목으로 구분

2. K-IFRS 도입에 따른 통신사업자 회계처리 변화 검토결과

현재까지의 외부보고된 통신사업자들의 회계처리 변화를 검토한 결과 영업손익, 영업외손익 등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IFRS를 적용하여 영업보고서를 산정하여 제출하는 2011회계연도 영업보고서에는 관련 이슈들이 나타날 것이므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형태별 분류 중에서 K-IFRS 도입과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라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영역이 요금수익부분이다.

K-IFRS가 도입되는 경우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수익인식에 어떠한 변화가 미치는지에 관한 선행연구인 안태식외 (2011)에서는 현재 도입 중인 K-IFRS 규정뿐만 아니라 현재 도입예정인 IFRS 공개초안까지 고려하여 '통제력' 중심의 수익인식 기준이 보조금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상기 논문을 바탕으로 IFRS 공개초안이 통신사업자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영업수익 형태별 분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15].

IFRS 공개초안이 기존 K-GAAP이나 현행 K-IFRS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수익을 인식할 때, '통제력'을 주요한 판단기준으로 사용하는 점이다. 현행 K-IFRS에서는 재화의 판매 시에는 '판매자가 판매된 재화의 소유권과 결부된 통상적 수준의 지속적인 관리상 관여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통제를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수익으로 인식(K-IFRS 수익문단 14)할 수 있고, 용역 제공시에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보고기간 말에 그 거래의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보고기간 말에 진행율에 따라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IFRS 공개초안에서는 '재화의 이전이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구분된 조항이 없고, 고객 재화나 용역의 통제를 확보할 수 있을 때 재화나 용역이 이전된 것'으로 본다(IFRS 공개초안

15) 안태식, 김범준, 현정훈, 'IFRS 도입이 통신산업 수익인식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010,5월호

문단 25 참조).

가.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

현재 통신3사 중에서 SK텔레콤을 제외한, KT,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 단말기를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자체 유통망을 통하여 단말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동전화 서비스와 결합하여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고객유치를 위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여 단말기를 공정가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K-GAAP과 금융감독원의 질의회신 결과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지출하는 판매촉진비와 유사하므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객과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통제력이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는 등 무형자산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자산처리도 가능(자산처리근거는 주석기재)하도록 되어 있다.[16] 이러한 회계처리는 2008년 전기통신사업법상 보조금 지급금지 규정이 일몰됨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최대 24개월까지 약정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 점을 고려하여, 단말기 보조금의 자산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었다(한종수 외 2010). 그러나 통신 3사는 회계처리의 일관성 등의 이유로 단말기 보조금을 판매촉진비로 당기 비용처리 하였다. 다시 말하면, 단말기 매출은 시가로, 매출원가는 구입가격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고, 별도로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다.

하지만 K-IFRS 도입에 따라 이동전화서비스와 결합하여 단말기를 무료 또는 할인 판매하는 경우, 단말기 매출수익은 단말기 매출로 인하여 수령한 대가를 한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회계처리가 변경되었다. K-GAAP에서는 단말기 매출과 매출원가를 각각 시가와 구입가격으로 인식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한 보조금을 당기비용

16) 금융감독원, 2008, '기간약정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 참고

으로 처리한데 반해, K-IFRS에서는 단말기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만 단말기 매출금액으로 인식하고, 단말기의 시가를 매출로 인식하지 않는 점에서 K-GAAP의 회계처리와 차이가 존재한다.

IFRS 공개초안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와 결합하여 단말기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총 판매수익을 단말기 판매 수익의 공정가치 및 서비스 수익의 공정가치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이는 단말기 판매를 별개의 거래행위(판매)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객 서비스 계약을 획득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보는 시각이다. 즉 고객이 단말기를 구입했다고 해서 고객이 단말기만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통제력'이 완전히 고객에게 이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말기 판매로 인한 수익을 단말기 판매 시점에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동전화 서비스 수익에 포함시켜 각각의 공정가치에 따라 안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K-IFRS에서는 1년차에 인식되지 않았던 단말기 매출수익이 IFRS 공개초안에서는 가입초기년도에 수익으로 인식되어, 회계기준 개정시 가입연도 초기 매출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나. 현금보조 회계처리

통신 3사 중 KT나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유통을 자사에서 직접 관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유통을 관계회사인 SK네트웍스에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판매로 인하여 매출액을 안분하여야 할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17], 유통망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유통망 보조금의 회계처리 문제는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T할부와 같이 단말기를 공정가치로 판매한 후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현금보조(형식상으로는 요금할인이나, 사실상 단말기 보조금임)를 하는 경우 K-GAAP에서는 판매촉진비로 간주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

17) SK텔레콤(통신사)과 단말기 유통회사인 SK네트웍스(단말기 유통회사)가 K-IFRS상 연결대상이 되는 경우, 동일한 경제적 실체로서 현금보조는 단말기 보조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말기 보조금회계처리와 같이 결합판매로 인한 매출액 안분대상이 될 수 있다.

하였고, K-IFRS에서도 현금보조와 관련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하게 판매촉진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IFRS 공개초안에 따르면, 고객 유치 혹은 연장을 위한 현금지급은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매출에서 차감 처리하는 시점은 재화 및 용역의 제공시점 또는 현금보조 의무 발생시점 중 늦은 시점에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IFRS 공개초안이 적용되는 경우, SK텔레콤과 유사한 형태의 현금보조를 하는 통신서비스 기업들은 손익에는 영향이 없으나, 보조금이 매출에서 차감되어 매출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18].

18) 통신서비스 산업에서는 이동전화 서비스와 단말기의 결합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결합상품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초고속인터넷과 초고속인터넷 모뎀의 결합, 유선전화, 이동전화, IPTV의 결합인 TPS(Triple Play Service) 및 기업형 솔루션 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결합(bundled)서비스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결합상품의 수익인식 시 이론적으로 크게 2가지 회계처리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는 수익인식의 단위문제이다. 특정한 단말기와 서비스가 결합된 통신 상품을 각각의 개별 제품 또는 서비스로 간주하여 별도 계정으로 인식할 것인지, 혹은 결합상품으로 보고 하나의 상품으로 하여 회계처리할지에 대한 문제이다. 이에 관하여 K-IFRS에서는 구체적인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미국 FASB를 보조하기 위해 설립된 EITF(Emerging Issues Task Force)에서 발표한 EITF 00-12 “Revenue arrangement with multiple deliverables” 결합상품 구분기준을 참고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첫째, 결합상품이 고객에게 ‘각각 별개로’ 가치를 제공하는지, 둘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로 구분 가능한지, 셋째, 제공된 상품은 고객에게 반품할 권리가 있고 제공되지 않은 상품은 통신사업자의 통제 하에 있는지 등 3가지를 결합상품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 기준 중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정가치 구분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그 구분이 어려울 때에는 결합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간주하여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는 결합상품을 개별 상품으로 구분한다고 할 경우 수익배분의 기준 문제이다. K-IFRS는 결합상품 판매수익은 결합상품을 구성하는 개별상품의 약관요금(공정가치) 비율대로 배분하여 회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결합상품을 개별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이동통신사업자의 수익 중 특정 상품에 배부가 어려운 기본료, 스마트폰의 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액요금제는 세부상품별로 구분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에게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음성서비스 이용료, 데이터 이용료를 모두 합하여 월정액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음성서비스 와 데이터 서비스를 일정량을 사용할 때까지는 정액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음성서비스, 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공정가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다. IFRS 공개초안이 영업보고서상 요금수익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보조금 회계처리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변경이 영업수익의 요금수익규모를 결정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IFRS 공개초안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정가치로 각각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결과에 따라 요금수익으로 결정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된다. 현재 단말기 매출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어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상 보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IFRS 공개초안이 실행될 것에 대비하여 단말기 매출과 요금수익의 배부기준을 규제목적에 부합하게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통신사업자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 그리고, 단말기 직접유통여부에 따라 요금수익과 관련된 영업수익이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요금수익과 관련된 기간통신사업자간 비교가능성을 현저히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단말기 관련 수익 비용을 철저하게 분리하여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융합현상이 보편화되어가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에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분류되던 단말기 매출 등을 영업수익 항목에 추가하여 단말기 매출과 요금수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스마트폰 활성화에 따른 영업수익 형태별 분류체계 개선

과거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기존의 이동전화(2G/3G)를 가입하는 경우 가입비 수익과 기본료, 통화료로 구분하여 요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 등의 스마트폰 그리고 아이패드 등의 태블랫 PC가 보편화된 현재에는 과금체계가 점차 정액요금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액요금체계 하에서 기존에 요금수익의 형태별 세부분류체계는 통신서비스 규제기관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정액요금수익 항목을 세분화하여 정액요금수익을 음성, 데이터,

SMS로 구분할 수 있도록 세분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액요금수익이 요금수익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경우, 기존의 영업수익 분류체계에서 기본료 수익과 통화료 수익 그리고 정액요금수익의 구분이 보다 모호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경우 사업자의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영업수익이 분류되는 경우 정책의사결정 자료로서의 유용성과 신뢰성이 하락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정액요금을 음성, 데이터, SMS로 개별 서비스별로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해당 통신사업자 비정액요금제 가입고객에게 음성, 데이터, SMS를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데이터 무제한의 경우 개별요금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수익분류체계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음성-데이터 회계분리가 되는 경우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서비스별 별도 손익을 산정하여 MVNO 요금산정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 3 절 세부역무 조정방안

1. 역무통합 반영

최근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체계의 변화흐름은 서비스의 융합화 추세에 따라 수평적 규제체계를 갖추고 진입규제를 단순화하기 하여 역무를 단순화하고 있다.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는 사후규제(행위규제)를 통하여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통신사업자의 행위가 적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된다. 특히, 회계정보의 경우 역무(서비스)간 불공정한 시장지배력 전이 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행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하고 정확한 회계정보의 필요성은 보다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기존의 3개의 기간통신역무인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1개의 기간통신역무로 통합하였으며, 통신사업자들은 이제 한번의 기간통신역무 허가로 시내전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동전화, 회선설비임대 등 다양한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회계분리기준 제3조에 명시되어 있는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부가통신역무 등 4개 역무, 28개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하여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 분류도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하도록 하고, 기간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진입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사후규제행위 대응을 위한 세분화된 회계정보 산출에 보다 많은 재량을 규제당국에 부여할 필요가 있다.

<표 5－6> 회계규정 제16조(역무의 분류)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회계 규정 제16조 (역무의 분류)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 - 중략-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 중략-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중략 -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의 세부분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회계분리를 위한 세부역무의 정의는 회계분리기준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즉, 역무통합으로 삭제된 회계규정상의 전송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를 회계분리기준에서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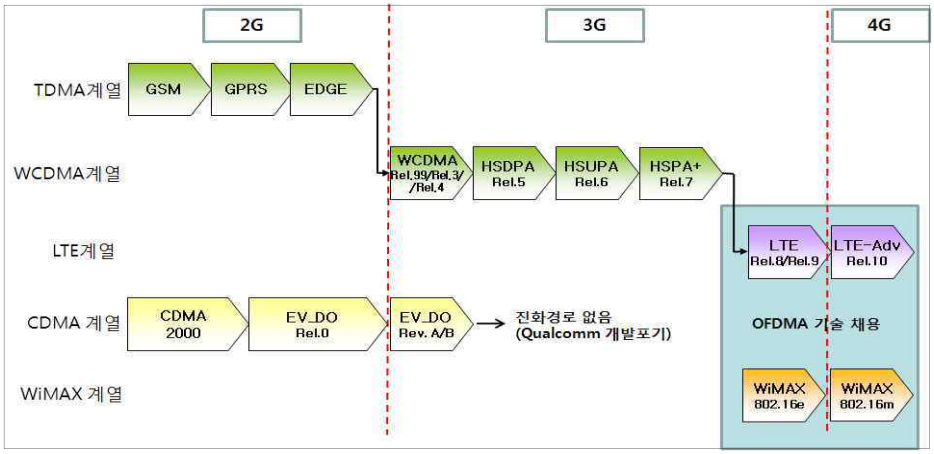
<표 5－7> 회계분리기준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회계 분리 기준 제3조 (세부 역무 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전송역무 가. -중략-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가. -중략-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가. -중략- 4.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기간통신역무 가.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1)~ -중략- 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1)~ -중략- 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1)~(4) -중략- 2.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2. LTE서비스 상용화

최근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LTE(Long-Term Evolution, 이하 LTE)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LTE는 3G 이동통신 표준에서 진화하여 3GPP에서 규정 및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3.9G로 분류되며, LTE의 진화된 기술인 LTE-Advanced가 4G 기술로 규정되어 있다. LTE는 3G 이동통신 기술에 비해 전송속도 및 효율성이 대폭 증가되어 네트워크 성능이 개선되었고, 전송지연을 최소화한 것이 강점이다. 수신과 발신 대역을 각각 10㎒로 활용하면 기존 3세대(하향 14.4Mbps) 서비스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5배 빠른 73Mbps(하향)를 제공하며, 상향은 36Mbps다. 1.4㎓ 영화를 한 편을 내려 받는데, 기존 3세대 서비스는 7분이 걸리지만 LTE는 불과 2분이면 가능한 서비스이다. 다시 말하면, LTE는 이용자가 기존보다 5배 이상 빠른 고속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림 5－2] 이동통신 기술진화 방향



출처 : 여재현, 박동욱,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 KISDI 프리미엄 리포트, 2010

현행 회계분리기준상 이동통신서비스를 주파수 대역의 분리를 통해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19]와 이동통신(IMT 2000)서비스[20]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에는 특정 주파수대역에서 하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주파수 대역을 통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정의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는 2011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파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800/900㎒, 1.8㎓ 및 2.1㎓대역 이동통신(IMT)용 주파수할당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때, 해당 대역의 주파수용도를 이동통신(IMT) 서비스 제공용으로, 기술방식을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이 채택한 IMT 표준 기술방식(3G이상의 기술방식으로 IMT-2000 및 IMT-Advanced를 의미함)으로 정하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700㎒ 2.5㎓ 등 향후 가용한 주파수대역이 신규 4G 대역으로 할당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기술방식에 의한 이동통신서비스를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LTE서비스가 상용화됨에 따라 이동통신(LTE)서비스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재현, 박동욱의 연구 (2010)에 따르면, LTE로의 전환은 Coordination Game[21]이므로 특정 사업자가 단독으로 먼저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LTE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네트워크 고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데이터 요금경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쟁수준의 심화는 망고도화와 차별화를 위한 추가투자 또한 유도하여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데이터 요금 경쟁과 네트워크 진화 경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데이터 부문에 대한 도매대가 조정 등 데이터 MVNO의 활성화를 추진하여 가격경쟁에 대한 규제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자들의 경우 4G에 대한 투자유인 확보를 위하여 요금인상 및 정액제 미도입 등을 고려

19)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800MHz 또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이동중에 송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가진자에 대하여 전용의 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이동통신서비스

20)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1.8~2.2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

21) 모든 플레이어들이 함께 동일한 선택을 할 때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을 일컬어 coordination game이라고 함. 표준화가 대표적인 예로서 네트워크 외부성과 규모의 경제로 인해 많은 플레이어가 동일한 표준을 선택할수록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4G 투자활성화와 도매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확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4G이동전화에 대한 영업수익과 비용 및 자산에 대한 회계분리정보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적정요금과 도매대가 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제도 개선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 환경변화에 따라 중요도 낮은 서비스 통폐합

무선호출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의 회계분리 중요도는 매우 낮다.

<표 5－8> 무선호출/무선데이터통신/위성휴대통신서비스 가입현황

구 분		2011.4월말	5월 가입현황		2011.5월말	점유율 (5월말 기준)
			증감	증감율		
무선호출 서비스	서울이통	18,521	-11	-0.1%	18,510	100%
무선데이터 통신서비스	에어미디어	56,489	-36	-0.1%	56,453	93.4%
	한세텔레콤	3,998	0	0.0%	3,998	6.6%
	합 계	60,487	-36	-0.1%	60,451	100.0%
위성휴대 통신서비스	글로벌스타	2,421	-3	-0.1%	2,418	37.9%
	코리아오브컴	3,709	260	7.0%	3,969	62.1%
	합 계	6,130	257	4.2%	6,387	100.0%

따라서 무선호출서비스,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위성휴대통신서비스는 개별 분류체계에서 제외하고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9>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분류체계 개선안

현행 서비스 분류체계	개선방안 (추가 및 통폐합되는 서비스)
가.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나.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이동통신(LTE)서비스
다. 무선호출서비스	삭제(기타에 포함)
라.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마.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삭제(기타에 포함)
바. 선박무선통신서비스	
사.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삭제(기타에 포함)
아. 위성통신서비스	
자.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차. 와이브로	
카.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제 6 장 결 론

본 연구로 인한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방안으로는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전용 설비는 직접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할당하고, 음성 및 데이터서비스 공용설비는 인과관계 및 원가행태를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한다. 수익의 음성데이터 분리는 사업자의 과금시스템과 연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음성데이터 분리의 수준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인지를 사전적으로 결정하여 배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K-IFRS 도입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상 형태별 분류체계의 개선방안은 분석결과, 대부분의 계정과목명은 기존의 K-GAAP에 따라 통신서비스 기업들이 사용하여 온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IFRS 도입에 따라서 별도로 영업보고서의 형태별 회계분리 체계를 변경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통신서비스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별 분류체계는 그대로 사용하고, 재무회계와 규제회계와의 조정을 최소화 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K-GAAP상 계정과목을 IFRS의 텍사노미상의 표준화된 계정과목명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다.

추가적으로, IFRS 도입에 따른 단말기 보조금 회계처리의 변화가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현행 K-IFRS에서는 회계처리가 K-GAAP과 달라지지 않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향후 수익인식과 관련된 IFRS 공개초안이 도입되는 경우 이동전화 요금수익과 단말기 보조금이 요금의 할인형태로 지급된 이동전화 단말기 판매수익을 결합판매 (multiple element arrangement)로 간주하여 2개 서비스(단말 매출과 통신서비스 제공)의 각각의 공정가치에 따라 요금수익을 안분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서비스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수익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현재 단말기 매출은 전기통신사업외의 사업으로 구분되어 이어 향후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에 따른 영업보고서 보고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IFRS 공개초안이 실행될 것에 대비하여 단말기 매출과 요금수익의 배부기준을 규제목적에 부합하게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추가적으로, 융합현상이 보편화되는 최근 흐름을 반영하여 기존에 비전기통신서비스로 분류하던 단말기 매출 등을 영업수익의 별도항목으로 추가하여 단말기 매출과 요금수익의 배부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하나의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대상 서비스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통신시장의 큰 변화흐름인 가상이동망사업자(MVNO)이 등장, 4G LTE 서비스의 상용화 그리고 서비스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및 서비스 중요도 등을 고려하였다. MVNO는 대부분의 핵심적인 통신망을 MNO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망 사용대가를 규제기관이 회피가능 비용차감방식(Retail-minus)방식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합리적인 망사용대가 산정을 통해 MNO의 이윤압착을 방지하고 시장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동전화 도매제공서비스”의 보다 정확한 손익과 투자보수율과 관련된 회계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를 위해 우선 LTE서비스의 회계분리가 필요하다. 또한,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들의 통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K-IFRS의 도입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 기준의 형태별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전기통신사업 영업보고서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형태별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전기통신 역무원가의 산정, 전기통신설비 간 상호 접속료, 설비제공대가의 산정,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역무간 상호보조 행위 등 전기통신사업의 공정 경쟁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에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무선 통합 및 음성, 데이터 융합 등 통신산업 환경변화와 전기통신사업 역무통합에 따라 회계분리대상 역무(서비스) 구분에 대한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여 규제비용은 감소시키고 규제정책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수행된 전기통신사업 회계 관련 선행연구는 주로 회계처리방식의 개선 및

2G/3G의 음성·데이터서비스의 회계분리방안, 기간통신역무 통합에 따른 통신회계 분리 대상역무 개선 등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통신서비스는 최근 가치사슬의 확장을 통해 새로운 스마트 생태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통신규제체계도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신회계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스마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 회계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제공되는 VoLTE서비스의 회계분리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가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스마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최소화 및 효율화를 위한 회계분리대상사업자 재설정방안 검토, 경쟁상황평가와 연계한 회계분리대상 역무 조정방안 검토,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도·소매서비스 회계분리방안 검토, 통신시장 가치사슬 확장에 따른 단말 및 플랫폼 관련 원가/수익 분리방안 검토 등이 필요하다. 또한 '12년 하반기에 도입될 LTE망에서의 음성서비스 제공에 따른 VoLTE서비스 회계분리방안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종 규제정책에 필요한 정보 산출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전기통신사업회계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정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별첨 1]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대통령령 제 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2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재무상태표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역무의 분류) ①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기간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제1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전기통신사업회계의 영업보고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및 주석으로 한다.	제5조(영업보고서의 종류) ----------재무상태표, ----------.
제2장 대차대조표	제2장 재무상태표
제16조(역무의 분류) ① 회계분리를 위한 전기통신역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전송역무 :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제16조(역무의 분류) ----------. 1. 기간통신역무
2.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 삭 제 >
3.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 삭 제 >
4. 부가통신역무 :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	2. 부가통신역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역무의 지역별 회계분리) 둘 이상의 사업구역에서 단일사업자가 경쟁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하여 유형자산・무형자산・영업수익・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 등을 사업구역별로 분리한다.	< 삭 제 >

[별첨 2]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스마트기기 활성화에 따른 데이터트래픽 폭증을 고려하여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를 분리하고, 중소사업자의 회계보고의무를 완화하는 등 통신회계 규제 합리화를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역무의 세부역무에 ‘이동통신(LTE)서비스’를 추가(안 제3조)

나. MVNO서비스 도입을 고려하여 수익 계정에 ‘재판매수익’ 항목을 추가하고,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고려하여 정액요금제와 종량요금제를 구분(안 제9조)

다. 음성・데이터 회계분리 시 세부설비별 트래픽 처리기능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설비 세분화 및 용어 개선(안 제14조)

라. 데이터트래픽 증가 등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해 음성과 데이터서비스의 회계를 분리(안 제31조의2)

마. 영업보고서 제출 사업자 기준을 연간 기간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완화(안 제42조)

바. 요금항목에 대한 사후검증을 위해 매출액 상세내역을 보조기록부에 기록하도록 명시(안 제45조)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호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제16조제2항 ・제17조・제19조제2항 및「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부역무의 정의) 회계규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세부역무(이하 “서비스”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1. 기간통신역무

가. 전송역무: 전신・전화・인터넷접속・인터넷전화 등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1) ~ (13) (생략)

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여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전자기신호를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없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역무

(1)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

(2) 이동통신(IMT2000)서비스

(3) 이동통신(LTE)서비스

(4) 무선호출서비스: 무선호출수신기를 휴대한 자에게 용건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신호·신호음 또는 전화번호나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

(5) 주파수공용통신서비스: 주파수를 공용하는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이동체에 장착하는 송·수신 설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전용교환설비를 이용하여 주로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6) 무선데이터통신서비스: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용교환설비를 설치하고 무선통신방식에 따라 데이터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서비스

(7) 선박무선통신서비스: 해안국을 경유하여 선박국 상호간 또는 선박국과 육지간에 이루어지는 통화 및 전보서비스

(8) 위성휴대통신서비스: 저궤도위성 또는 중궤도위성 및 전용 교환설비를 설치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9) 위성통신서비스: 통신위성과 지상의 위성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10) 이동통신부가서비스: 지능망설비 또는 별도의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8조제3항,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서비스

(11) 와이브로: 2.3G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휴대인터넷서비스

(12) 기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가목부터 차목까지 이외의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서비스

다.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1) ~ (4) (생략)

2.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외의 전기통신역무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형태별 분류) ① 영업수익을 요금수익, 접속료수익, 국제정산수익, 내부거래수익, 자가소비사업용수익, 보편적역무손실보전수익, 재판매수익, 기타영업수익으로 구분한다.

② 요금수익을 가입비수익, 종량요금제수익, 정액요금제수익, 장치비수익, 부가서비스수익, 기타 요금수익으로 구분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전송기능설비

가. 가입자중계전송설비

나. 기지국설비

다. 기지국제어장치

라. 시내중계전송설비

바. 0x 회선중계전송설비

바. 시내접속중계전송설비

사. 시외중계전송설비

아. 00x 회선중계전송설비

자. 국제중계전송설비

차. 기지국-교환국간전송설비

카. 이동교환국간전송설비

타. 전송기능공통설비

제14조제3호 다목 및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지국-교환국간선로설비

차. 이동교환국간선로설비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 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의 전기통신설비와 전기통신설비운영비용은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해 음성서비스와 데이터서비스로 배부한다.

제32조제3항을 다음과 한다.

③ 사업자중 단일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간 기간통신서비스의 매출액이 30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1. 재무상태표(별지 제1호 서식)

2. 손익계산서(별지 제2호 서식)

제4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요금제별로 가입자수, 요금수익 구성내역, 매출할인, 통화량 등 상세내역을 보조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제2011-00호, 2011. 12. 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작성부터 적용・시행한다.

제2조(이동통신(IMT-2000)서비스의 음성・데이터서비스 배부) 기간통신사업자는 제42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영업보고서에 한해 제31조의2 규정에 따른 별지5-2호를 2012년 6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김문수(2003), “ITU Access Network의 기능적 모형에 근거한 이동망의 가입자접속 부문의 정립에 관한 연구”, 한국통신학회논문지 ‘03-1 Vol 28 No 1A, pp.17~24.

박준호, 강병민(2007), “음성·데이터원가의 회계분리”, 정보통신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 제14권 제2호 (2007년 6월) pp.53-79.

안태식, 김범준, 현정훈(2010), “IFRS 도입에 따른 통신산업 수익인식 변화”, 회계저널.

여재현, 박동욱(2010), 『이동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망 및 정책방향 - LTE 진화를 중심으로』, KISDI 프리미엄 리포트.

정충영(2004), “이동망 음성 및 데이터 공유설비 비용배분 방안”,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논문지 제8권 제8호 (2004. 12) pp.1802-1809.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분기보고서”, 2011.5.30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사업보고서”, 2011.3.31

주식회사 케이티, “분기보고서”, 2011.5.30

주식회사 케이티, “사업보고서”, 2011.3.31

주식회사 LG유플러스, “분기보고서”, 2010.5.30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사업보고서”, 2010.3.31

금융감독원 회계포털사이트

한국회계기준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09.12.

한국회계기준원, “현행 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주요차이와 영향분석”, 2008. 11. 01.

해외 문헌

ACCC, “Accounting Separation of Telstra – Current Cost Accounting Report for July-December 2010”

ACCC, “Current Cost Accounting Report relating to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Telstra for July to December 2007”, 2008. 5

ACCC, “Imputation Testing and Non-Price Terms and Conditions Report relating to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Telstra for the March Quarter 2008”, 2008. 5

ACCC, “Regulatory Principles for Public Disclosure of Record-Keeping Rule Information”, 2003. 1

ACCC, “Telecommunications Industry Regulatory Accounting Framework”, 2003. 10

ARMIS Filing Requirements for Carriers, http://www.fcc.gov/wcb/armis/

BT, “Current Cost Financial Statement for 2011 including Openreach Undertaking”

Commonwealth of Australia,“Trade Practice Act 1974: Australia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ounting Separation - Telstra Corporation Limited) Direction (No.1)2003”, 2003. 6. 19

Moon-Soo Kim(2006), “The Criteria, Procedure, and Classification of Traffic-Sensitive and Non-Traffic-Sensitive Components: A Case of CDMA Mobile System”, *ETRI Journal*, Volume 28, Number 6, December 2006.

NATPⅡ, Reference Guideline on Accounting Separation, 2006. 12. 7

Ofcom, A new pricing framework for Openreach: Annexes-Statement, 2009. 5. 22

Ofcom, “Changes to BT’s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and audit requirements”, 2007. 5. 30

Ofcom, “Changes to BT and KCOM’s regulatory and financial reporting 2010/11 update”, 2011.2

Ofcom, “Determination to resolve a dispute between Opal Telecom and British

Telecommunications PLC (Openreach) about LLU bulk migration charges", 2006. 6. 2

Ofcom, "The regulatory financial reporting obligations on BT and Kingston Communications in markets where SMP has been demonstrated", 2004

http://www.iasb.org

● 저 자 소 개 ●

고 창 열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
· 한양대 회계학과 박사수료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 상 우
· 서강대 경영학과 졸업
· KAIST IT 경영학 박사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정 내 양
· KAIST 전산학과 졸업
· 한국과학기술대학원대학교 박사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

박 소 영
· KAIST 산업공학과 졸업
· KAIST 산업공학과 석사
·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가-12

이동통신서비스 음성·데이터서비스 회계분리 및 통신회계 프레임워크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Accounting Separation of Mobile Service and the Framework of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s)

2011년 12월 11 일 인쇄
2011년 12월 11 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
TEL: 02-750-1114
E-mail: webmaster@kcc.go.kr
Homepage: www.kcc.go.kr